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289-01

#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2015.12.







##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발간에 즈음하여....

현대 사회는 조직화되고 많은 자본을 가진 기업,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연구개발을 주도 하면서 국내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출원이 매년 80%를 상회하는 등 직무발명의 비중과 가치가 매우 커졌습니다.

중소 ·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 발명을 통한 기업혁신이 필수입니다.

합리적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종업원들은 열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동기를 확보 할 수 있고 기업은 종업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결과물을 이용한 기술 경쟁력 강화, 우수 인재의 이탈 방지, 기업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우수사례집은 중소·중견기업 등 기업 규모별로 탁월한 운영의 묘를 바탕으로 종업원의 창의적 발명의지를 고취하여 기업성장에 밑거름이 되게 한 다양한 직무발명 보상 우수사례를 수록하여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본 우수사례집을 활용하여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으로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우수발명을 창출함으로써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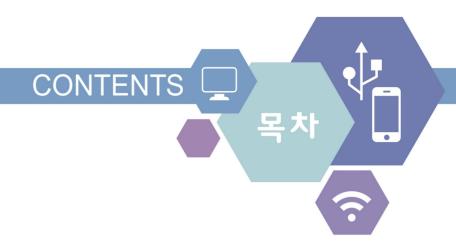
2015년 12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



#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1.	식무발명에 대한 소개	
	01. 의의 및 현황	3
	02. 제도의 필요성 및 근거규정	3
	03.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혜택	6
	04.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7
Π.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 운영사례	
	01. 동우화인켐(주)	13
	02. (주)뷰웍스	29
	03. (주)동진쎄미켐	<del>1</del> 3
	04. 솔브레인(주)	53
	05. (주)효신테크 (주)	53
	06. 한국정보통신(주)	75
	07. (주)에버켐텍	)1
	08. 신화인터텍(주)	)9
	09. 스타십벤딩머신(주)	)9



# Ⅲ. 부록

01.	직무발명 모델 규정	121
02.	Q&A로 알아보는 직무발명보상제도	130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130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권리와 의무	137
	예약승계규정	141
	보상금의 산정과 지급	144
	직무발명을 둘러싼 다툼의 해결	150
	기타	153



# **직무발명**에 대한 소개

01. 의의 및 현황 02. 제도의 필요성 및 근거규정 03.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혜택 04.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 01 의의 및 현황

직무발명은 ⑦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⑥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¹) 직무발명에서의 '발명'은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술의 복잡화 및 융합화에 따라,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즉, 조직화되고 충분한 자본을 가진 기업,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연구개발을 주도하 면서, 개인발명에 비해 직무발명의 비중과 가치가 점점 증대하고 있습니다.

#### ▶ 국내 특허출원 중 법인(기업 등)의 특허출원 현황

구분	'08	'09	'10	'11	'12	'13	'14
개인출원(A)	33,443	35,588	33,267	35,424	36,940	38,356	39,041
법인출원(B)	137,189	127,935	136,834	143,500	151,975	166,233	171,251
계(C)	170,632	163,523	170,101	178,921	188,915	204,589	210,292
비율	80.4%	78.2%	80.4%	80.2%	80.4%	81.3%	81.4%

[특허청]

# 02 제도의 필요성 및 근거규정

현대사회의 발명 형태는 개인중심의 발명 형태로부터 기업 등 조직적인 발명 형태로 이행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의 귀속관계가 문제되는데,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 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발명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한 사용자 등의이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업에서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up>1)</sup>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2013년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그 동안 미비했던 점을 개선함으로써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발명진흥법에 의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의 창출을 장려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의욕과 직무만 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직무발명보상이 발명의 건수 증가 및 발명의 질 향상으로 이어 져 기술개발을 촉진시킵니다.

#### ▶ 직무발명보상규정 보유기업 및 미보유기업의 지식재산활동 현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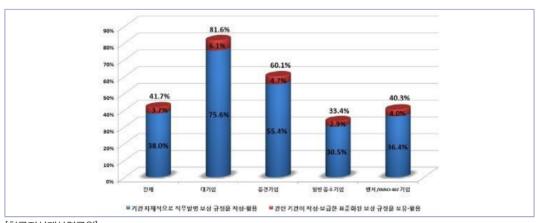
상기 통계에서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특허출원 건수 몇 배가 됨은 물론 직무발명 증대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회사에서 적정한 보상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획일적인 급여제도로 인한 직원들의 근로의욕 저하와 이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효과는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 증가 및 애사심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후술 하는 우수사례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례와 인터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 ▶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①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의 난해함 ⑥ 기업의 획일화된 경영 방침 ⑥ 근로자가 직무상 발명한 것은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② 연구 개발자 아닌 다른 직무 담당자들과의 형평성 등과 같 은 이유로 도입률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하지만,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우수 운영기업의 사례에서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직원)에게는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사용자(회사, 연구소, 대학)에게는 종업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이용한 경쟁력 강화, 매출신장, 기술축적,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03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제 혜택

#### 가. 정부 세액공제

#### ☑ 종업원(발명자)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 사용자(기업)

#### 직무발명 보상 지급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6]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한다.

-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발명자):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사용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특시행령 제8조 제1항관련 별표6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사용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나. 궁극적으로 기업의 발전에 기여

"기업은 보다 거시적 안목으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종업원은 보다 열심히 연구개발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등 발명자에게 좋은 처우를 하고, 이것이 종업원의 훌륭한 발명으로 다시 이어진다면, 기업과 기술자 모두가 풍요롭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를 두는 이유입니다."2)

<sup>2)</sup> 김준효, 「아이디어 스파크」, 2011년, 159~160면, 양문출판사



# 04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혜택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및 선정

[발명진흥법 제11조의 2 제1항]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 6 제2항]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다음 각 호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선정될 수 있다.

- 1) 직무발명 보상 계약 또는 규정(승계절차, 보상절차, 이의신청, 심의, 조정, 중재 등 포함)을 보유할 것
- 2)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을 것
-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 ≥ 인증서 발급 절차



- \* 인증여부의 통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료의 보완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 \* 인증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1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 (신청) 연중 수시 접수
  - (심의) 신청 건수에 따라 월 1~2회 심의위원회 개최
  - (발급)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여부를 기업에 통보
  - (인센티브)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 신청 자격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 인증 심의 기준 및 유효기간

• 평가 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운용의 합리성(4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체제	<ul> <li>직무발명보상규정의 보유 여부</li> <li>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보상형태 및 보상액 등 보상기준,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의 규정 여부</li> <li>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심의,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의 규정 여부</li> </ul>
직무발명보상실적	- 직무발명보상 사실 (비금전적 보상 포함) - 직무발명 건수 대비 직무발명보상 건수의 비율 (직무발명보상률) - 실시보상 또는 처분보상의 실적 (출원유보보상 포함)
직무발명보상규정의 합리적 운용	<ul> <li>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받은 종업원의 설문조사 여부</li> <li>보상형태와 보상액 등 보상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와 종업원간 협의 및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으로부터의 의견청취 여부</li> <li>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여부</li> <li>사내 직무발명심의기구의 설치·운영 및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이견,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여부</li> </ul>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 함은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말함. 각 평가항목별 평가의 대상은 우수기업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사실, 실적 등에 한하며, 직무발 명보상 규정의 경우 우수기업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 인증 기준 :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 인증 유효기간 : 인증된 날로부터 2년



#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기업의 자발적인 <del>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과 보상 문화의 확신을</del> 위한 유인책으로 정부지원사업 대상 선정 時 인센티브 부여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 ☑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특허청 지원사업 ('15년 12월 기준)

사 업 명				
민간 IP-R&D 전략지원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전략지원 사업			
	중소기업 IP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특허기술평가 지원(일반)			
	특허기술거래컨설팅 지원			

•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15년 12월 기준)

사 업 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시업	글로벌전략기술개발			
	혁신기업기술개발			
7 1 7 10 0 H = 17 1 1 1 1 1 1 0	기업서비스연구개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ᄌᄮᄀᆝᅅᄊᄋᇶᄀᆝᄼᄁᄖᄔᆝᅅ	센터연계형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할어 서자기스케바디어	민관공동투지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기술개발			

•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15년 12월 기준)

사 업 명	
SW공학 기술현장 적용 지원사업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4~6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 운영사례

01. 동우화인켐(주)

02. (주)뷰웍스

03. (주)동진쎄미켐

04. 솔브레인(주)

05. (주)효신테크

06. 한국정보통신(주)

07. (주)에버켐텍

08. 신화인터텍(주)

09. 스타십벤딩머신(주)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동우화인켐(주)



# 01 기업개요

#### ▶ 일반 개요

## **TOP PARTNER IN 3E!**

21세기를 선도하는 전자/에너지/환경 분야 최고의 동반자

#### ELECTRONICS I IT소재분야의 총체적 공급자

동우화인례은 첨단 소재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IT 산업국가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 동우호

#### 미래 에너지산업의 파트너 | ENERGY

동우화인례은 산재생에너지 발전과 깨끗한 미래환경을 위해 기능성재료의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ENVIRONMENT |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IT기업

동우화인켐은 친환경 소재와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하며 케미컬 리사이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Challange

무한도전 | 끊임없는 성장을 통한 차세대 성장 견인

동우화인캠은 1991년 설립이래 반도체용 고순도 Chemical의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전자재료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후 세계 IT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TFT-LCD 소재산업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무한 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Core

핵심기업 | 스미토모화학 정보전자 네트워크의 중추

동우화인캠은 스미토모화학 정보전자부문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추로 자리매감하고 있습니다. 동우화인캠의 100% 주주사이자 창업 1세기에 빛나는 스미토모화학(㈜은 화학산업 전 분야에 걸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류에게 유용한 기술과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고 사화문제 해결에 공헌하겠다는 기업정신을 기반으로 세계 곳곳에 사업장을 두고 다양한 화학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Technology**

기술선도 | 신기술 개발의 원대한 꿈

국내 최초로 반도체, TFT-LCD 제조 시 필수소재로 사용되는 고순도 Chemical, Etchant, Photo Resist, 칼라필터 및 팬광필름의 자체개발을 추진하여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의 국산화를 이루었으며, 신 시업 육상에도 힘을 기울여 LED 용 부재료와 최근에는 터치센서패널, 고순도 알루미나 시엄 등에도 적극 진출해 정보전자소재 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최고의 파트너 위치를 확고히 디제나가고 있습니다.



#### Value

가치지향 | 전자 에너지 환경 분야의 최고의 파트너

동우화인캠은 첨단 IT 소재분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분야를 아우르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최고의 품질실현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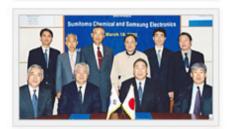
#### ▶ 주요 연혁

## 1991~1999 탄생과 성장



- 1991 동우반도체약품(주) 설립
- 1992 익산기술연구소 설립
- 1994 16M D램용 과산화수소 출하
- 1995 64M D램용 과산화수소 개발
- 1997 256M D램용 반도체약품 개발
- 1999 동우화인켐(주)로 사명 변경

## 2000~2009 발전과 전기



- 2000 수출 5000만불의 탑 수상
- 2001 수출 7000만불의 탑 수상
- 2002, 2003 산업포장 수상
- 2005 매출 1조원 달성
- 2006 수출 10억불 탑 수상
- 2009 TPS사 사파이어 부문 인수

#### 2010~ 새로운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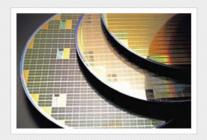
- 2010 매출 2조원 달성
- 2011 산업포장 수상
- 2012 TS-1기 준공
- 2013 터치센서 2기 건설 MOU 체결
- 2014 TS-2기 준공



#### ▶ 사업영역

## 초고순도의 케미컬로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공헌합니다.

- 동우화인켐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용 케미컬을 자체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 오랜 기간 쌓아온 초극미량 분석 노하우와 최첨단 설비, 전품목 통계적 품질관리 시스템이 동우화인켐의 반도체용 케미컬이 가진 경쟁력입니다.



#### 선명한 화면의 필수요소-LCD용 케미컬

- 고객님이 보고 계신 모니터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의 LCD가 보이십니까?
- 선명한 LC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감광제와 세정제 동우화인템의 자랑인 LCD용 케미컬이 필요합니다.
- LCD의 대형화와 스프레이 공정 강화로 이에 적합한 케미컬 제품이 필요해졌습니다.
- 동우화인템은 축적된 노하우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차별화된 LCD용 케미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편광필름은 TFT-LCD의 핵심소재로 초고기능성 제품입니다.

- 제품원리 | 편광필름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분자축 방향의 빛을 흡수하여 직각방향으로만 빛을 투고하게 만드는 제품입니다. 백라이트에서 나온 빛을 액정 배열 방향으로 편광시키고 패널 사이의 액정 물질이 이 빛을 회전시켜 회면에 연결할 수 있도록 빛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동우화인템은 독자적인 연신기술로 1,850mm 이상의 광폭제품을 생산하며, 광범위한 그레이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분자 합성, 가공기술 및 염료기술을 기초로 한 고기능성 필름과 고부가가치 필름 개발에도 박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 컬러필터는 -LCD 색상구현의 통로입니다.

 동우화인템의 컬러필터는 안료분산법을 사용하여 Glass위에 정교한 패턴을 만들어 최고품질의 색상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가장 직관적 Interface인 터치 패널의 핵심 - 터치센서

#### Touch Sensor Panel for AMOLED(On Cell Type)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Tablet PC,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내비게이션 등 각 전자제품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터치패널, 그 터치패널의 가장 핵심 부분인 터치센서를 가장 최첨단의 Photolithography 공정을 적용 가장 최적화된 제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고순도 알루미나(High Purity Alumina) 생산

동우화인켐㈜ 삼기공장은 고순도 알루미나의 생산공장입니다. 스미토모화학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2013년에 익산 제3 일반 산업단지내의 3만 9천m2 부지에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스미토모화학의 에히메 공장에서는 주로 전자부품용 세라믹스, 수지필러, 사파이어 단결정용의 고순도 알루미나 제품을 생산하고, 삼기 공장에서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Ⅲ 제품, 전기자동차 및 ESS(Energy Storage System) 등에 사용되어지는 Li→lon 이차전지의 전국 및 Separator 코팅용의 고순도 알루미나 제품을 생산해 갈 예정입니다.

#### 동우화인켐의 새로운 경쟁력 신소재산업에서 찾아냅니다

-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 동우화인켐은 탄소배출권거래 제도 시행과 함께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태양광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소재 등 에너지와 친환경 소재 분야에도 진출하여 미래시장에 대비합니다.



#### ▶ 수상 이력



2001.11 제38회 무역의날 7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3.11 제40회 무역의 날 1억볼 수출의 탑 및 은탑 산업훈장 수상



2006.11 제43회무역의날 10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2.12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유공자 표창

**2012.11**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6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2011.07 안전보건우수사례발표대회 장려상

2011.07 1사1하천 가꾸기 활동 장려상











2009.12 특허분쟁 경진대회 최우수상

**2009.07** 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

**2008.10** 한일상업협력기업인 표창

2008.02 방화관리능력 우수사업장 표착

**2002.03** 모범 납세자 표창

#### ▶ 인증 이력

# O KOLAS (공제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2004 / 평택

산업지원부 기술표준원

2004 / 익산

산업지원부 기술표준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013 / 평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0

한국산업안전공단











녹색기언

2012 환경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인증 2010

지식경제부

PSM 최우수사업장 인증(P등급)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인증

20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11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온실가스 인벤토리 3자 검증

2010 에너지관리공단









성실납세자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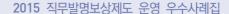
2011

평택시청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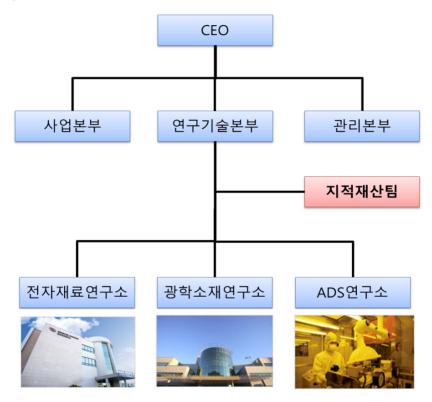
지식경제부







# 02 조직도



# 03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용

동우화인켐(주)은 2009년 지적재산팀을 신설하여, 기존 기획부서의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의 일환으로 처리하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였고, 2015년 현재 팀장 1인을 포함한 총 15명의 팀 멤버가 국내/해외 특허관리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Patent Clearance/Patent Map/타사 특허 대응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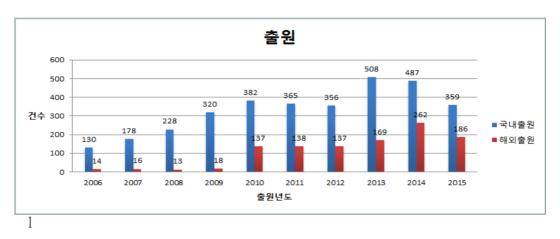
동우화인켐(주)은 신기술 개발을 위해 전자재료 연구소, 광학소재 연구소, ADS연구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연구소들의 개발 테마에 맞추어 각각의 개발 부서별로 전임 지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재 담당자는 발명자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더불어 특허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연구소와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우수한 특허를 발굴할 수 있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팀원 전원은 특허정보분석사(PAP) 및 특허정보검색사(PSP)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지재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신뢰도를 구비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지재 관련 외부 직무교육을 수강함으로써 전문지식 습득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04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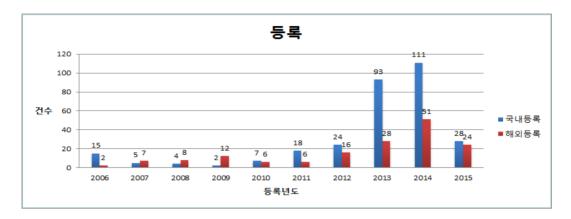
동우화인켐은 설립 초기부터 꾸준하게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노력해 왔으며, 2009년 지적 재산팀이 구성된 이후부터는 해외출원의 비중을 늘리는 등 국내·외 전체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출원 건은 2010년부터, 등록 건은 2013년부터 꾸준히 다수의 특허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질적으로도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특허권을 보유하기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05 특허 교육실적

특허 교육은 크게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사교육 및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지적재산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구분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재교육을 위해 외부강사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사내 지재전문가를 육성 하여 사내강사를 통해 연구원 및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지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적인 교육은 매년에 1~2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원의 수준에 따라 Level별로 분류하여, 기초, 중급, 고급, 검색 등의 단계별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특허법 및 특허침해, 명세서 작성, 선행기술조사 방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순한 청구범위 해석뿐만 아니라 직접 연구개발 테마에 관련된 선행문헌을 검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주로 외부 교육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변경된 특허법 및 주요 Issue에 대해 변리사 초빙을 통해 교육을 받아 법률적 지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팀 내부적으로 월 1회 세미나 발표 및 토의를 통해 지재권 관련 변동사항, 신규 판례 및 권리 해석방법 등에 대한 이해/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는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그룹웨어의 교육 신청 시스템에 외부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발명진흥회의 IP CAMPUS) 스케쥴을 입력하여 그룹웨어에서 손쉽게 외부 교육을 확인 가능하도록 교육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사내 교육 커리큘럼〉

	교육 시간	우선 교육대상자	강사	주요 교육내용
Level 1	3-4hr	신입사원	사내강사	특허의 필요성, 발명의 종류, 특허성, 특허제도 명세서 구조 및 이해, DW 특허 운영 시스템
Level 2-1	3hr	진급자	사내강사	특허분쟁 사례소개, 특허권의 효력, 청구범위 해석, 침해판단 실습
Level 2-2	3hr	진급자	사내강사	발명의 종류 명세서의 역할 및 기재방법 청구범위 작성방법 설명 실습
Level 3 (필요시)	2hr	과장 책임연구원	변리사	선정된 1가지 주제에 대한 심화학습 (특정 특허제도, 파라미터 발명 등)
특허검색교육	8hr	신입 경력사원	사내강사	특허검색 DB의 사용법 검색전략 수립방법 검색식 작성방법 설명 및 실습

# 06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지급 규정

동우화인켐은 설립 초기부터 첨단기술인 반도체 소자 제조를 위한 에천트를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기술력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도 편광필름 등 다양한 IT 사업 분야의 기술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기술본부 산하 3개의 연구소 조직을 갖추고, 이와 더불어 연구 성과물의 가치화를 위하여 우수특히 발굴 및 특허출원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회사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다양한 보상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등록 건뿐만 아니라, 노하우로 관리하는 기술까지 출원과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고, 모든 직무발명에 대해 출원보상, 등록보상 및 실시보상의 단계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시보상의 경우에는 매출과 그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최대 1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심사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기준〉

	출원보상 (노하우 포함)	등록보상	1차 실시보상	2차 실시보상
지급액	10만원	30~100만원	300만원	1천만원~1억원 (평가등급별지급)

# 07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연구원들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우수한 특허를 발굴하기 위해 설립 초기부터 현재와 동등한 수준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해왔습니다. 특히 실시보상의 경우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업계에서 많이 부족했던 2001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에 기여했던 특허의 발명자들에게 지급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자사 특허 포트폴리오의 내용이 점차 풍부해짐에 따라 매출에 기여하는 등록특허의 건수가 증가하여 거의 매년 실시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품 특성상 노하우로 관리되는 기술로 특허 출원되지 못한 기술이나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 등 대한민국 법률로 보상을 강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지적재산권까지도 폭넓게 보상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연구 성과를 지적재산권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줄워 •	등록보상금	지급액〉

지급연도	출원보상	등록보상
2011	37,199,725	5,199,999
2012	28,899,834	12,999,984
2013	25,633,214	24,395,000
2014	61,193,054	40,899,986
2015	50,199,730	미진행 (연말 지급 예정)
합계	203,125,557	83,494,969

#### 〈실시보상 지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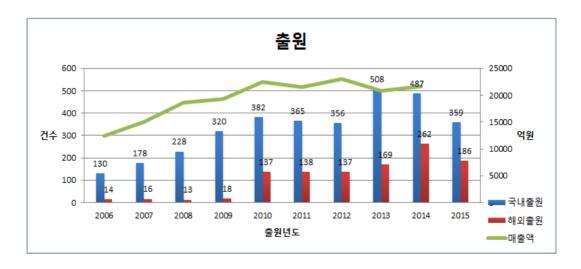
· 구분 년도	1차 실시보상		2차 실시보상	
	건수	보상금액	건수	보상금액
2004	5	15,000,000	0	·
2006	2	6,000,000	0	
2007	0	-	2	55,000,000
2008	1	3,000,000	0	
2009	0	-	2	80,000,000
2010	2	6,000,000	1	70,000,000



구분	1차 실시보상		2차 실시보상	
년도	건수	보상금액	건수	보상금액
2011	0	_	0	-
2012	4	12,000,000	0	-
2013	3	9,000,000	2	100,000,000
2014	2	6,000,000	1	40,000,000
합계	19	57,000,000	8	345,000,000

# 08 제도 운영의 효과 및 매출의 변화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의 보상제도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연계된 성과물의 권리화에도 관심을 가지는 연구원이 많아짐으로써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허권을 확보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사업군에서의 선도적 입지 강화는 물론, 신규로 개척하는 사업군에 있어서도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특허권을 다수 확보할 수 있어 조기에 신규 사업을 안정화 단계로 이끌어 내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에 힘입어 우수한 기술개발을 통해 2005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하였고, 불과 5년만인 2010년에는 매출 2조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 09 기타

출원·등록 등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수년간에 걸친 관리기간 동안 단순히 최초 출원시에 계획된 스케줄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시로 연구소와 사업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청구와 해외출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주기적으로 연구·사업 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활용도가 높은 특허들을 적은 비용으로 보유할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특허를 관리하기 위해 자시에 특화된 특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 중이며, 출원에서 등록 후 포기 결정까지 전 과정에 대한의사 결정 과정을 이러한 특허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허관리의 전과정을 하나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20년에 걸친 특허존속기간 동안 언제라도 직무 발명 보상의 대상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주)뷰웍스



## 01 기업개요

구분	세부내용	비고
기업명	(주)뷰웍스	총 직원수 : 204명, 2015.06.30 기준
조직	(주)뷰웍스 부설연구소	연구소 인원 : 74명, 2015.08. 기준
전담조직	부설연구소 내 연구기획팀	2011년 신설
전담직원	2명	선임 연구원, 연구원
직무발명 도입 년도	2006년	

#### ▶ 주요 연혁

- 1999 (주)레이시스 설립
- 2000 대한민국 산업기술 대전 동상 수상(산업자원부)
- 2001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 Maxxray, RXDM-0405 런칭
- 2002 Digital Fluoroscopic 1.0 Megapixel Camera 런칭
- 2003 2003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산업자원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지정
   2003년 IR52(장영실상) 수상
   NT인증(산업자원부) 및 정밀기술진흥대회 금상 수상
- 2004 INNO-BIZ 업체 인증(중소기업청)
- 2005 Slimpac RF 런칭 수출 200만 달러 달성
- 2006 QXR 시리즈 런칭
   사명 변경 (주)레이시스 → (주)뷰웍스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 • 2007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산업자원부)

2007년 세계일류상품 선정 2007년 보건산업기술대전 대상 수상

- 2008 벤처코리아 2008 대통령 표창 수상
   제 45회 무역의 날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중소기업청)
- 2009 코스닥 시장 상장
- 2010 2010년 코스닥 히든 챔피언 선정
   세계 최초 9,600만 화소급 산업용 카메라 개발
- 2011 2011년 코스닥 히든 챔피언 선정
   WATC(세계일류기술연구센터)지정(지경부)
   세계 최초 2억 6천만 화소급 산업용 카메라 개발

#### 제 1회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개최

• 2012	2012년 코스닥 히든 챔피언 선정
• 2013	2013년 코스닥 히든 챔피언 선정
• 2014	2014년 코스닥 히든 챔피언 선정 (5년 연속) 신사옥 이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2015	VN-25MX Red Dot Design Award: Product Design 2015 수상 Vision Systems Design Innovators Awards 2015: Platinum 수상 2015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

#### ▶ 인증 현황

구분	인증 현황
	KGMP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2008 ISO 13485:2003
	CMDCAS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2004 KSI ISO 14001:2009
	KFDA (Maxxray, QXR-9, QXR-16, Slimpac II RF, Slimpac II SC, QXLink, VIVIX-S)
	CE (Maxxray, QXR-9, Slimpac II RF, Slimpac II DSA, VIVIS-S, QXLink)
	FDA (QXLink, QXR-9, QXR-16, VIVIX-S)
의료 영상 솔루션	Health Canada (QXR-9, QXR-16, VIVIX-S)
	UL (Maxxray, QXR-9, QXR-16, VIVIX-S)
	CFDA (VIVIX-S)
	ANVISA (VIVIX-S)
	Gost-R (VIVIX-S)
	CE (VH Camera, VH GigE, VA, VC, VN, VX Series)
산업용 카메라	FCC (VH Camera, VH GigE, VA, VC, VN, VX Series)
	KCC (VH Camera, VH GigE, VA, VC, VN, VX Series)



#### ▶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



(주)뷰웍스는 의료영상 처리장비, 영상 센서 및 정밀 광학 신호 처리장치, 광학기기 설계분 야를 선도하는 개발업체로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 디지털 투시기 및 조영 촬영 장치를 위한 디지털 영상 솔루션을 설계, 개발, 생산하여 공급하는 이미징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고품질의 진단영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와 조작이 편리한 이미징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주)뷰웍스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신호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자동화 분야 및 정밀 검사, 항공용 촬영, 보안, 과학 및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주)뷰웍스의 제품이 적용 및 활용되고 있습니다.

## 02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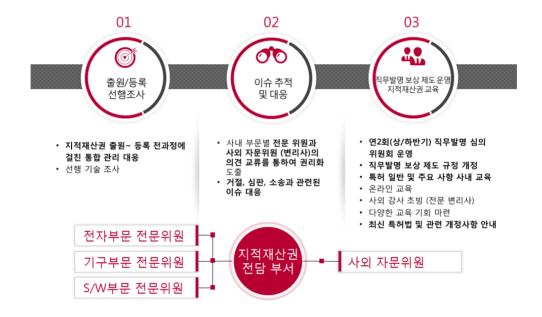


\* 부설연구소 연구기획팀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은 선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임



## 03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용

(주)뷰웍스는 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설연구소 연구기획팀 내 전담인력 2 명을 육성하여, 크게 3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04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2000년 ~ 2015년 10월 30일 기준)

구분		특	허	상표/서	네스표	디자	记	프로그램	비고
٦	亡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등록	חודי
	_	33	23	12	9	3	3	32	
국내	전용 실시	-	5	_	_	-	_	_	
	개별	9	4	7	4	_	_	_	
	PCT 국제	6	_	_	_	_	_	-	* 상표/서비스표 : 마드리드 출원
해외	PCT 국내	19	1	10	2	_	_	-	
	전용 실시	_	1	_	_	_	_	_	

<sup>\*</sup> 출원취하/소멸/거절/포기 등의 권리 제외

<sup>\*</sup> 출원은 총 출원 건수 중 출원취하/소멸/거절을 제외 (등록된 건 포함)

## 05 특허 교육실적

일정	실적	비고
2011. 4. 13	산업재산권 일반, 선행기술검색,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 제안서 및 명세서 작성 실무교육	사외 강사 초청 교육
2013. 4. 25	제안서 및 명세서 작성 실무, 특허청구범위해석, 명세서 작성 요령 교육	사외 강사 초청 교육
2015. 9. 16	부설연구소 전 연구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선행기술조사 및 이를 통한 경쟁기업의 특허 보유 현황 파악, 명세서 작 성 전 관련 기술 선행 검토 기준/방법, 분쟁에서의 청구범위의 기능 및 이를 통한 발명 제안서 작성 방법 교육	사외 강사 초청 교육
2012 취대	연구소 신규 입사자(신입/경력) 입사 시, 지재권 전담 부서에서 산업재 산권 일반,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 교육 진행	사내 교육
2013~현재	기업체 지적재산 이러닝 (IP-ACADEMY) 운영을 통해 개별 맞춤 수강 지원	온라인 교육

<sup>\*</sup> 신규 입사 시 진행하는 지재권 전담 부서의 내부 교육 이외에 당사 전담 특허사무소의 변리사 초청을 통하여 당사 지재권 현황에 알맞은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 발명진흥회 및 특허지원센터를 통한 특허 관련 전문교육 실시와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업 무 적용 및 전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6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지급 규정

#### ▶ 직무발명 보상기준 (출원 보상금)

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	
국내출원	20만원	100101	100101	
해외출원	40만원	10만원	10만원	

<sup>\*</sup> 국내/해외 출원 보상금은 분류 지급된다. (단, 동일 발명 건의 해외 다출원 건일 경우, 한 국가에 한하여 지급)

<sup>\*</sup> 국내출원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외출원 보상금은 차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 ▶ 직무발명 보상기준 (등록 보상금)

(발명자 발표 → 심의위원 심사 후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

등급	평가점수	국내특허	해외특허	실용신안	의장
1등급	85점 이상~100점	100만원	150만원		
2등급	70점 이상~85점 미만	80만원	120만원		
3등급	55점 이상~70점 미만	60만원	90만원	20만원	10만원
4등급	40점 이상~55점 미만	50만원	75만원		
5등급	40점 미만	40만원	60만원		

- \* 국내/해외 등록 보상금은 분류 지급된다.
  (단. 동일 발명 건의 해외 다등록 건일 경우. 한 국가에 한하여 지급)
- \* 국내특허 등록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외등록 보상금은 차액 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 \* 등록 보상금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평가결과 발표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 \* 최초특허 외에 개량특허, 보완특허와 관련한 등록 보상금의 지급은 아래 표에 따른다. (특허 가치에 따른 차등 지급)

구분	등록 보상금	정의
개량특허	최초 출원과 동일	원 특허에서 새로운 부품이나 구성요소가 접목되어 원 특허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특허
보완특허	지급 없음	원 특허에 단순 부품변경, 실시예 추가, 알고리즘 상의 변형 등으로 원 특 허를 보완함에 그치는 특허 (통상적으로 보완특허는 최초 출원된 것이 미흡하여 (긴급출원, 최초제안 의 오류 보완 등) 이를 보완하여 출원하는 특허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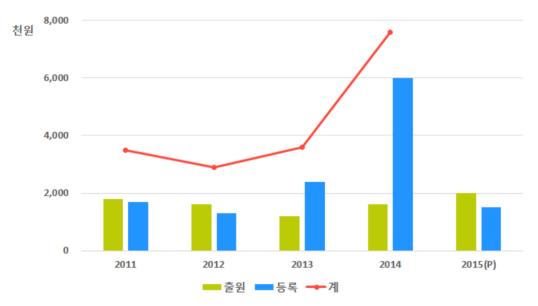
<sup>\*</sup> 이외 보상금은 당사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름

# 07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2011년 ~ 2015년)

#### ▶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실적

(단위: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계
지급 현황	3,500	2,900	3,600	7,600	3,500	21,100



<sup>\*</sup> 최근 등록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국내 100만원, 해외 150만원) 발명 및 제안에 대한 동기부여와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 중임

#### ▶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 사례

당사 특허 중 'X선 영상 촬영장치 및 그 구동 방법' 특허는 최초 한국과 미국에 출원 및 등록이 되었고, 파생 특허의 한국 출원 및 등록과 PCT 출원이 총 8개국 국내 단계 진입 중이며, 특허권의 지속적인 관리로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여, 당사의 핵심 기술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	출원번호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한국	10-2011-0076271	10-1126582	X선 영상 촬영 장치 및 그 구동 방법
미국	13/558,375	9,103,922	X-RAY IMAGING APPARATUS AND METHOD OF OPERATING THE SAME
미국	14/741,052	-	X-RAY IMAGING APPARATUS AND METHOD OF OPERATING THE SAME
미국	14/741,113	_	X-RAY IMAGING APPARATUS AND METHOD OF OPERATING THE SAME
한국	10-2012-0119477	10-1377115	X선 영상 촬영 장치 및 그 방법
PCT_미국	14/006,041	_	X선 영상 촬영 장치 및 그 방법
PCT_일본	2014-535670	_	X선 영상 촬영 장치 및 그 방법
PCT_유럽	12869581.4	_	X선 영상 촬영 장치 및 그 방법
PCT_인도	1668/MUMNP/2013	_	X선 영상 촬영 장치 및 그 방법
PCT_러시아	2013140978	_	X선 영상 촬영 장치 및 그 방법
PCT_중국	201280019561.5	_	X선 영상 촬영 장치 및 그 방법
PCT_캐나다	2,828,344	_	X선 영상 촬영 장치 및 그 방법
PCT_브라질	112013023063-0	_	X선 영상 촬영 장치 및 그 방법

#### 08 제도 운영의 효과 및 매출의 변화

#### ▶ 제도 운영 전/후, 국내/외 특허 출원 현황 비교

일정	국내출원	PCT 출원	개별출원
제도 운영 전	11	1	_
제도 운영 후	29	12	9

<sup>\*</sup> 제도 운영 시점인 2006.10.1 기준으로 전후 구분

#### ▶ 제도 운영의 효과

2006년 제도 신설 후, 초반에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으나, 2011년 전담 부서 운영 이후 당사의 현 실정에 맞는 규정 개정 진행을 통해 현재까지 활발하 게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발명진흥법에 따른 이슈사항 등의 검토를 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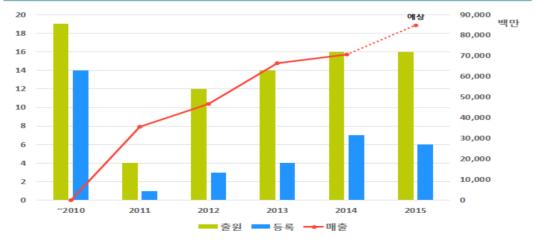
<sup>\*</sup> PCT 출원은 국내 단계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1건으로 집계

부서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기 표와 같이 전체적인 출원 건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해외 출원이 많아지는 등 내부적으로 국내/외 특허 권리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 IP 단체 교육 및 신규 입사자에 대한 지적재산 권 일반 교육수행, 연구노트, 기술자료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감에 있어 향후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매출의 변화

당사가 보유한 특허는 당사의 주생산품의 핵심 기술 특허로, 당사 제품 매출의 대부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핵심 특허의 보유와 그에 따른 파생 신제품 출시로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증대는 양질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재투자로 이어져 특허권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매출액 (단위 : 억)	비고
2011	356억	* 2010년 이전 매출액 미포함
2012	468억	
2013	665억	
2014	708억	* 2015 상반기 410억원 포함
2015 (예상)	850억	



- \* 2015년 지적재산권은 상반기 실적, 매출액은 2015년 예상 실적에 해당함
- \* PCT 국내 단계 진입 시, 각 국가별 1건으로 집계
- \* 등록은 권리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의 등록 건 집계



## 09 기타

- 2014.11.10 ~ 2016.11.09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 획득
- 지적재산권 관련 정부 사업 및 지적재산권 관련 컨퍼런스/세미나 등의 참여를 통해 당 사의 지재권 확보를 위한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있음
- 당사 경영계획 수립 시, 매년 연간 지적재산권 출원에 대한 사항을 목표로 지정하여 직 무발명 활성화를 유도함
- 당사는 신제품군 개발과 관련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학계 및 동종 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 특허 출원을 하는 등 지재권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함
- 당사는 직무발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핵심기술 개발 및 권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독려하고 그에 따른 노력에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고자 하며, 보완/개량 특허 보상금 규정 신설, 종원원 대표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인증번호 : 제 2014-00188호

업 체 명 : 주식회사 뷰웍스

대표자명 : 김 후 식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3(관양동)

유효기간 : 2014. 11. 10 ~ 2016. 11. 9

「발명진홍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위의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특 허 청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주)동진쎄미켐



#### 01 기업개요



본사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44
홈페이지	www.dongjin.com/
설립일	1967년 10월 20일
대표이사	이부섭, 이준혁
주생산품	포토레지스트 등
직무발명 도입 년도	2001년

주식회사 동진쎄미켐은 1967년에 설립되어 PVC 및 고무발포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 국산화하면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1973년부터는 발포제 수출업체가 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인도네시아의 해외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1995년에는 시화공장을 증설하는 등 발포제 부문에서 세계 1위 업체로 부상하였으며 UNICELL이라는 브랜드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발포제 분야에서 쌓아왔던 명성과 기술력으로 1980년대 초반 선구적으로 반도체 및 FPD 재료산업분야에 투자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EMC 사업을 필두로 반도체 재료분야에도 적극 진출하여 수많은 반도체 회로의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실리콘 결정체인 웨이퍼 위에 도포하는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를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4번째로 개발하였으며, 1990년 최초로 자체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1995년 발안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수입에만 의존하던 반도체 재료의 국산화를 선도하는 한편, 1999년 대만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세계시장 공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발안공장 2단지 완공, 대만공장(2001), 북경공장(2004), 치동공장(2006), 성도공장(2009), 합비공장(2010), 서안공장(2012),

얼도스공장(2013)을 차례로 설립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재료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대체에너지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분야에 집중 투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연료전지를 구현하기 위한 촉매기술, 전해질기술 및 전극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고성능 MEA 제조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실리콘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솔라셀 페이스트 및 차세대 염료감응 태양전지용 고효율 염료개발에성공하여 이를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판교연구소를 준공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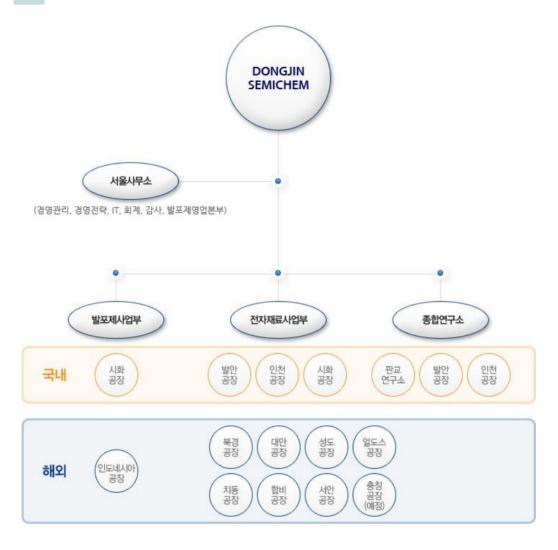
주식회사 동진쎄미켐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당당히 겨루는 자랑스러운 기업, 인간을 위해 더욱 편리함을 선물하는 존경받는 기업, 50년을 넘고 또 다시 100년을 넘어 영속하는 참된 기업이 되기 위해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 ▶ 주요 연혁

- 1967. 10 동진화학공업사 설립
- 1973. 7 동진화성공업주식회사로 법인 전환
- 1976. 5 인천 발포제공장 준공
- 1990. 11 Positive P/R용 Developr, Stripper 개발
- 1996. 10 16MDRAM 급 I-Line P/R 개발
- 1998. 11 35회 무역의날 5천만불 수출의 탑 및 산업포장 수상
- 1999. 8 (주)동진쎄미켐으로 사명 변경
- 1999. 12 코스닥증권시장 등록
- 2000. 8 256M DRAM용 Photoresist 개발
- 2002. 11 39회 무역의 날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07. 8 아시아 경제발전 공로상 수상
- 2009. 10 ISO 9001, 14001, OHSAS 18001 인증서 획득
- 2010. 12 무역의 날 수출 2억불 탑 수상
- 2012. 4 지식경제부201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대상기업 선정
- 2014. 8 (주) 동진디스플레이재료 합병



# 02 조직도



## 03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용

주식회사 동진쎄미켐의 특허전담부서는 2000년에 신설되어 현재 경영지원부서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주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류는 반도체와 FPD 분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화학재료이며, 대표적으로 포토레지스트, 슬러리, 절연막, 스트리퍼 등이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제품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의 기술적 특징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업 아이템별로 지적재산 업무담당을 구분하고 있으며, 기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 제품의 권리화를 위한 특허성조사,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의 기술조사와 같은 선행기술조사 업무와 함께,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발명 아이디어를 출원, 관리하는 업무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경쟁기업들로부터 당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사업분야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04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2011	2012	2013	2014	합계
ال ال	출원	90	83	76	81	330
국내	등록	25	44	78	63	210
해외	출원	107	106	64	87	364
	등록	72	86	87	75	320

#### 05 특허 교육실적

주식회사 동진쎄미켐은 연구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명 아이디어를 활용 가능하도록 권리화하기 위하여 체계적, 지속적으로 수준별 특허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 연구원은 입사 시 초급 특허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각 직급별로도 중급 특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장급 이상 승진 시 직급에 맞는 교육을 개설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이용교육 및 사내 특허관리 시스템 이용방법에 대한 이용교육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06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지급 규정

주식회사 동진쎄미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2001년에 최초로 도입하였고,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다양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발명 아이디어가 직무발명으로써 국내에 출원된 경우에는 출원보상을 하고, 이 특허출원이 등록되어 제품에 적용 예정인 경우에는 등록보상을 하고, 적용 중인 경우에는 실시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최다출원에 대한 특허왕 포상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별규정을 두어, 기존 규정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큰 특허로 판단이 된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 80만원	실용신안 5만원			
	5만원			
S등급	1,000만원			
A등급	500만원			
B등급	250만원			
C등급	100만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07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모든 국내출원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출원보상 1038건, 실시보상 92건이 있었습니다. 특허왕은 2009년에 신설되었으며, 매년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원보상지급액 (원)	등록보상지급액 (원)	실시보상지급액 (원)
2011년	41,100,000		
2012년	39,500,000		10,000,000
2013년	27,000,000		23,000,000
2014년	22,200,000	2,500,000	50,000,000

## 08 제도 운영의 효과 및 매출의 변화

주식회사 동진쎄미켐의 사훈은 '신기술 개발로 세계를 제패하자!'입니다. 회사 창립 초창기에 이미 발포제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후 발포제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경쟁사들로 인한 매출하락이 우려되던 시점에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확보해둔 특허출원을 기반으로 하여 지금의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재료 분야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특허 확보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꾸준히 운영하여 오고 있고, 출원 시에는 직무발명보상을 하여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며 등록 시에는 등록보상이나 실시보상을 하여, 제품과의 관련성이 높고 기술가치가 뛰어난 특허의 개발을 더욱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4500억원이었던 매출액이 2014년에는 670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매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출액 증가 및 기업의 성장에 당사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09 기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시행하는 2014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 심의에서 인증 적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인증번호 : 제 2014-00172호

업 체 명 :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대표자명 : 이부섭, 이준혁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44(가좌동)

유효기간 : 2014. 10. 10 ~ 2016. 10. 9

「발명진홍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위의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합니다.

2014년 10월 08일



특 허 첫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솔브레인(주)



# 01 기업개요







#### soul '혼', '정신', '마음'을 의미.

상반된 개념의 공존을 시각화 시 키기 위해 "젊음", "희망"을 상징 하는 푸른색으로 표현

## "신비", "독창성"을 의미.

이질적이지만 공존할 때 더욱 강력해 지는 역량의 결합, 이로써 발생하는 시 너지 효과를 보라색으로 표현

#### brain '머리', '지능', '지성'을 의미.

"지성", "미래", "성숙"을 의미하는 회색으로 표현

본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4
홈페이지	www.soulbrain.co.kr
설립일	1986.05.06
대표이사	정지완
주생산품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2차전지소재
직무발명 도입 년도	2009년

#### ▶ 주요 연혁

- 1986.05 테크노무역상사 설립
- 1994.0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첨단소재제조업 시작)
- 1996.12 연매출 1백억 돌파(LCD소재 산업 진출)
- 1999.10 테크노무역(주)를 테크노세미켐(주)로 사명 변경
- 2000.01 KOSDAQ 상장
- 2002.11 중앙연구소 설립
- 2006.12 연매출 1천억 돌파
- 2009.03 (주)파이컴 인수 (현 솔브레인이앤지)
- 2011.09 솔브레인(주)로 사명 변경
- 2012.09 판교 중앙연구소 완공

#### ▶ 지재권 관련 활동

- 2012.11 IP표준업무절차지침서 수립
- 2013.11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제2013-00074호)
- 2014.01 직무발명보상규정 개정(정당성 확보)
- 2014.07 IP 시스템 구축
- 2015.01 직무발명보상규정 개정(보상금 신설 및 증액)



## 02 조직도



## 03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용

솔브레인 특허팀은 사내의 특허 전담인원 총 4명으로 구성하며, 과거 한국 및 미국 특허소 송을 승소로 최종 마무리하였고, 2011년 해외 경쟁사의 경고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분쟁의 위험을 제거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년간의 해외 분쟁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개발 이전단계부터의 "특허조사"를 통해 '분쟁예방' 및 '특허확보'에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조사 결과를 연구담당자와 특허담당자가 서로 협력하여 검토하고, 체계적인 'IP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그 과정과 결과를 경영진이 참고하게 함으로써, 특허 경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04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연도	국내출원건수	해외출원건수	소계	국내등록건수	해외등록건수	소계
2012	16	12	39	22	6	28
2013	32	0	32	12	5	17
2014	55	0.5	55.5	7.5	3	10.5
2015	47	10	57	13	5	18
합계	161	22.5	183.5	54.5	19	73.5

## 05 특허 교육실적

솔브레인은 연구원에 대해 지속적인 특허 Mind 고취 및 양질의 지식자산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내용
(가) 외부강사초빙 특허교육	임직원	발명진흥회와 전자산업진흥회의 특허지원사업을 이용하여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매년 실시
(나) 사내강사 특허교육	임직원	특허교육전담자가 임직원 대상으로 특허교육을 매년 실시
(다) IP-R&D Workshop	연구원	연구팀과 특허팀이 핵심기술에 대한 기존 특허를 공동으로 검토한 후, 연구방향을 모색하고 특허망을 확보
(라) 일대일 발명상담	임직원	연구원 개인 및 팀에 맞추어 교육 또는 상담을 항시 실시
(마) 온라인 교육 사이트	임직원	soulbrain.ipacademy.net 다양한 교육과정을 항시 운영
(바) 솔브레인IP시스템 영상교육	임직원	ip.soulbrain.co.kr 임직원을 위한 IP 업무절차와 시스템 교육과정을 항시 운영
(사) 대리인용IP시스템 영상교육	대리인	pa.soulbrain.co.kr 대리인을 위한 IP 업무절차와 시스템 교육과정을 항시 운영



#### 06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지급 규정

HAL 140	기존의 보상금	2015년 개정된 보상금			
보상 내용	보상금액(제정/시행)	보상금액(B급이하)	보상금액(A급)	보상금액(S급)	
국내특허출원보상	10만원(20009.08.01)	10만원(기존동일)	20만원	30만원	
국내특허등록보상	30만원(20009.08.01)	30만원(기존동일)	40만원	60만원	
해외특허출원보상	10만원(20009.08.01)	10만원(기존동일)	20만원	30만원	
해외특허등록보상	40만원(20009.08.01)	40만원(기존동일)	50만원	80만원	
특허출원유보보상	1만원(20009.08.01)	5만원			
특허권리처분보상	기준 없음	처분액의 10% 범위 내, 최대한도 1천만원까지			
특허권리실시보상	기준 없음	순이익의1% 범위 내, 최대한도 1천만원까지			
특허침해적발보상	기준 없음	30만원			

#### 07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 ①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실적

※ 보상실적(최근 5년간의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 지급 현황표)

연도	출원유보	국내출원	해외출원	국내등록	해외등록	금액
2012	₩0	<b>\\$2.600,000</b>	₩1,000,000	₩6,300,000	<b>#</b> 1,366,668	<b>#</b> 11,266,668
2013	₩0	₩3,200,000	₩0	₩2,136,666	<b>#</b> 1,335,000	₩6,671,666
2014	₩90,000	₩6,900,000	₩100,000	₩2,100,000	₩1,600,000	₩10,790,000
합계	₩90,000	₩12,700,000	<b>\\$1,100,000</b>	<b>\\$1,100,000</b>	<b>#</b> 4,301,668	₩28,728,344

#### ② 우수 직무발명 사례

솔브레인은 외형적으로는 중견기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다른 회사들 보다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솔브레인 특 허팀은 이러한 시장상황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신고서 접수 에서 특허출원까지의 소요기간이 평균 6주 걸리던 것을 5일로 대폭 단축시켜, 신속한 출원일

#### 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브레인은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IP 보호를 더 강화시키는 특허포 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특허팀과 연구원 외에 명세서를 작성할 변리사로 구성되는 '직무 발명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직무발명의 출원여부를 심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발명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아이디어 회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연구팀에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성장동력에 해당되는 기술 분야 및 경쟁 회사의 기존 특허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 연구방향 설정과 특허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08 제도 운영의 효과 및 매출의 변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직전 해인 2008년도의 특허출원은 17건이었으나, 직무발명제도 도입 후 계속적으로 특허출원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56건(12년도 대비 350% 증가)으로 출원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을 이룬 것에 대한 이유로써, 첫째는, 보상제도의 도입이 발명자에게 동기부여를 크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는, 성장동력에 해당되는 기술 분야의 특허망 구축에 적극적인 솔브레인 전담부서의 IP 활동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솔브레인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크게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에게는 연구개발의 동기부여와 성과확대를 유도하고, 회사에게는 양질의 IP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솔브레인의 성장 동력이 매출로 직결되는 시점에는 특허권의 독점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외국 경쟁사와의 차별되고 극대화된 매출 실적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효과〉

구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P)
매출액	2200억	2900억	4800억	6630억	6350억	5380억	6300억
국내출원	17	13	25	16	32	56	106
보상제도	없음	신설(8월)	_	_	_	개정(정당성)	개정(증액)
전담부서	_	계열사	계열사	본사	본사	본사	본사



## 09 기타

- 2013년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
- 2013년도 특허경영대상 개인 대상 수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장 표창)
- 2014년도 특허경영대상 단체 동상 수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표창)
- 2015년도 제50회 발명의 날 개인 발명장려유공자 수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장 표창)
- 2015년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주)효신테크



## 01 기업개요



본사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50
홈페이지	www.costimo.com
설립일	2003년 8월 13일
대표이사	유상운
주생산품	상업용 오븐 및 가정용 보일러 부품
직무발명 도입 년도	2010년

#### ▶ 주요 연혁

- 2003. 03. ㈜효신테크 설립
- 2010. 0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0. 08. 유망중소기업 선정(인천광역시)
- 2011. 01. 국내 최초 가스식 소형(6단) 콤비 오븐 개발
- 2011. 08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청장 표창
- 2011. 11. 비전기업 선정(인천광역시)
- 2013. 01 국내 최초 외장형 훈연기가 설치된 콤비 오븐 개발
- 2014. 06.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인천지방중소기업청)
- 2014. 09. 국내 최초 내장형 훈연기능을 포함한 콤비 오븐 개발
- 2014. 1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특허청)
- 2015. 02. 인천광역시 IP 스타기업 지정(인천지식재산센터)
- 2015. 06. 고성장(가젤형)기업 지정(중소기업청)
- 2015. 08. 고용창출우수기업 선정(인천지방중소기업청)
- 2015. 11. 벤처활성화 유공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2015. 11. 26 수상 예정)

## 02 조직도



## 03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용

2010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상업용 오븐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자 연구개발 의욕 향상과 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발명자의 관심 부족과 관리부서의 미온적 대응으로 직무발명제도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지식재산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직무발명보상규정을 개정하여 직무발명보상제 도의 정착과 발명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경영목표와 지 식재산경영목표를 연계한 사업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식재산관리부서 설립을 통해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창의적 발명과 기술개 발을 유도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 인력의 지식재산 활용과 기술역량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기획 및 아이디어 회의에 참여하여 지식재산 및 기술동향 정보 등을 제공하고,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술개발 결과물의 성과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04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7 8		출원 중		등록		
구 분	국내(건)	해외(건)	계(건)	국내(건)	해외(건)	계(건)
특허	3	7	13	11	2	13
디자인	_	-	_	5	_	5
상표	_	_	_	3	_	3
계	6	7	13	19	2	21

<sup>\*</sup> 해외특허출원 :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 진행건(3건) 포함('15. 11월이내 출원 예정)

#### 〈보유 지식재산권 목록〉

	등록된 지식재산권							
	순번	종류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표장(상표)	
	1		KR	2009-0098315	2009-12-31	10-0936041	질소탱크의 기밀검사장치	
	2		KR	2010-0104365	2011-03-18	10-1024931	콤비 스팀 오븐의 흡입관 개폐장치	
	3		KR	2010-0104361	2011-05-30	10-1038938	콤비 스팀 오븐의 배수 배기구조	
	4		KR	2010-0104351	2011-03-18	10-1024934	콤비 스팀 오븐의 물공급 방향 유지장치	
	5		KR	2010-0104364	2011-05-30	10-1038933	콤비 스팀 오븐의 열교환관 장치	
	6		KR	2011-0006173	2013-01-29	10-1229371	콤비 스팀 오븐의 물받이구조	
	7	특허	KR	2012-0003540	2012-07-18	10-1168363	훈연기가 설치된 콤비 스팀 오븐	
	8		KR	2013-0163447	2014-04-23	10-1390473	오븐용 AC모터의 브레이크 제어시스템	
	9		KR	2014-0177628	2015-06-18	10-1531350	열 손실을 줄여 열 효율을 높인 조리용 콤비 오븐	
등록	10		KR	2014-0177627	2015-06-12	10-1530048	내장형 훈연 기능을 포함한 콤비 오븐	
	11		KR	2015-0046850	2015-09-24	10-1556958	내장형 훈연 기능을 포함한 콤비 오븐	
	12		JP	2011-229377	2013-03-01	5210425	콤비 스팀 오븐의 흡입관 개폐장치	
	13		CN	201110322062.0	2014-10-08	CN102450961B	콤비 스팀 오븐의 흡입관 개폐장치	
	14		KR	2009-0042331	2010-12-22	30-0583685	보일러배관카바용 받침대	
	15		KR	2010-0046345	2010-12-22	30-0583690	콤비 스팀 오븐	
	16	디자인	KR	2015-0016866	2010-09-02	30-0814194	화상디자인이 포함된 콤비 오븐	
	17		KR	2015-0016867	2010-09-02	30-0814196	화상디자인이 포함된 콤비 오븐	
	18		KR	2015-0016868	2010-09-02	30-0814198	화상디자인이 포함된 콤비 오븐	
	19		KR	2010-0057337	2011-09-21	40-0881527	COSTIMO	
	20	상표	KR	2011-0006948	2013-01-14	41-0249198	HYOSHIN	
	21		KR	2012-0065570	2013-10-01	40-0998227	COSTIMO	

	출원중인 지식재산권						
	순번	종류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고안)의 명칭/표장(상표)	
	1		KR	2015-0116509	2015-08-19	콤비스팀오븐의 응축수 배출장치	
	2	특허	KR	2015-0116516	2015-08-19	콤비스팀오븐의 배수장치	
출원	3	KR	KR	2015-0116518	2015-08-19	콤비스팀오븐의 공기 흡입관 개폐장치	
굴건	4		TH	1101002774	2011-10-21	콤비스팀오븐의 흡입관 개폐장치	
	5	해외	VN	1-2011-02860	2011-10-25	콤비스팀오븐의 흡입관 개폐장치	
	6	특허	PCT	PCT/KR2011/008962	2011-11-23	콤비스팀오븐의 물반이구조	
	7	P	PCT	PCT/KR2015/010707	2015-10-12	내장형 훈연 기능을 포함한 콤비 오븐	
	8	디자인	KR	2015-0018132	2015-04-09	훈연기	

## 05 특허 교육실적

연구개발 인력 및 발명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이해를 돕고 활용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선행기술조사할 수 있도록 키프리스 활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허전담조직 외 연구개발 관련 임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사내·외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성장과 연구개발 인력의 창의적 발명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담부서의 직무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내	• 외	교윤실점〉
--------	-----	-------

구분	개최일	주요내용	기관
1	2009. 10. 30	특허실무 전문과정	부평지식재산센터
2	2010. 03. 30	특허실무 입문과정	부평지식재산센터
3	2010. 06. 24	지식재산 아카데미	인천지식재산센터
4	2010. 11. 02	지식재산 브랜드	인천지식재산센터
5	2010. 11. 04	지식재산 아카데미(디자인)	인천지식재산센터
6	2011. 05. 03	지식재산 아카데미	인천지식재산센터
7	2014. 04. 11	14년도 이종분야 특허검색(OPIS) 2차 세미나	한국발명진흥회
8	2014. 04. 14	지식재산 IP 아카데미(특허전문과정)	인천지식재산센터



구분	개최일	주요내용	기관
9	2014. 06. 02	트리즈 교육(융합R&D기획 지원사업)	인천테크노파크
10	2014. 06. 11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IP 온라인 교육 (10개과정, 4개월)	한국발명진흥회
11	2014. 07. 11	트리즈 특강(IP제품혁신 과제_GEN3)	한국발명진흥회
12	2014. 07. 16	2014년 지식재산활용 컨퍼런스	한국발명진흥회
13	2014. 09. 01	직무발명보상제도 컨설팅	한국발명진흥회
14	2014. 09. 19	특허기술이메일링 이용자 교육	인천지식재산센터
15	2014. 12. 02	IP(지식재산) 기술경영 교육	인천지식재산센터
16	2015. 07. 21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 (특허IP Star PM사업 연계_특허법인 다해)	인천지식재산센터
17	2015. 08. 06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	인천지식재산센터
18	2015. 09. 09	2015년 지식재산활용 컨퍼런스	한국발명진흥회
19	2015. 10. 19	COMPAS(경쟁정보분석서비스) 활용 교육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	2015. 11. 16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지재권 분쟁지원 세미나	인천지식재산센터

## 06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지급 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액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발명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은 금전적인 보상 외 승진, 승급 등의 비금전적 보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2014년 9월 직무발명보상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아 연구개발 인력의 발명의식을 제고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은 발명의식의 확산으로 이어져 연구개발 인력 및 개발 관계자의 사기진작과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업의 발전에 발맞춰 합당한 직무발명 보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기업과 발명자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기준〉

	출원	등록	기타
특허	30만원	30~100만원	
실용신안	20만원	30~100만원	실시·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 비금전적 보상은 직무 발명 보상금 산정기술세칙에 따라 지급
디자인	10만원	30~100만원	

## 07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 ▶ 콤비 오븐과 훈연기술의 융합

해외 선진제품과의 경쟁 및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특허 동향 및 경쟁사 기술 분석을 통해 콤비 오븐과 훈연기술의 융합을 미래가치의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훈연기능을 포함된 콤비 오븐 개발에 매진하여 2013년 국내 최초로 외장형 훈연기가 설치된 콤비 오븐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개발 제품의 성과활용을 통해 2014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5년 개발 결과물의 개선과 개량을 위한 고도화개발을 추진하여 훈연기를 내장화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다수의 특허를 권리화했습니다.

#### ▶ TRIZ 도입과 IP제품혁신

기술력 성장의 정체를 극복하고 혁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의 IP제품혁신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과제 수행을 통해 TRIZ를 기술개발의 혁신도구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TRIZ 도입과 창의적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기술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세계적 수준의 훈연기술을 내장한 콤비 오븐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과제 수행의 성과로 자산가치가 높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IP제품혁신 과제의 성공적인 개발사례는 2015년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최한 2015년도 지식재산 활용 컨퍼런스에서 우수 개발사례로 발표하였습니다.



#### ▶ 직무발명의 활성화

지식재산관리부서의 설립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정착하고, 다양한 지식재산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학연 기술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관리부서의 설립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정착으로 정체되어 있던 연구개발과 직무 발명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후 확보한 지식재산권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출원보상	등록보상	계
2012년	1	_	1
2013년	_	_	0
2014년	_	1	1
2015년	24	8	32
합계	25	9	34

〈직무발명 보상실적〉

## 08 제도 운영의 효과 및 매출의 변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은 전략적 R&D투자와 도전적 연구활동으로 이어져 기업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은 28% 성장했으며, 고용창출은 1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수출액은 1만불에 그쳤으나, 2015년도 수출액은 10만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태국, 베트남, 홍콩, 싱가폴 등 다양한 국가의 에이전트를 통해 수출판로가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자산가치가 큰 양질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제조 중소기업으로는 높은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직무발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직무발명의 성과와 보상은 기업발전과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 경영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매출액(백만원)	3,362	4,635	5,616	7,000
수출액(USD)	0	7,415	10,905	100,000
고용창출(명)	29	34	37	40
R&D 투자비율(R&D/매출액)	27%	29%	20%	20%
산업재산권 출원(건)	2	1	2	11

#### 〈최근 3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출원								등록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보유 누계(~2015년)		15년)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계
특허	1	_	1	2	-	2	4	4	8	11	2	13
디자인	_	_	_	_	-	_	4	_	4	5	_	5
상표	_	_	_	_	_	_	_	_	_	3	_	3
계	1	_	1	2	-	2	8	4	12	19	2	21

## 09 기타

#### ▶ 주요 제품 "코스티모" 콤비 오븐 소개

콤비 오븐은 고온의 열을 강제대류 시키는 방식의 컨벡션 오븐에 오븐 내부로 고온의 스팀을 공급하는 스팀오븐 방식을 결합한 콤비 오븐으로 기존 컨벡션 오븐보다 조리시간이 짧고 온도 및 수분 조절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티모" 콤비 오븐은 차별화된 훈연 기능을 추가하여 조리 식품에 훈연재료의 향과 색의 풍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코스티모 콤비 오븐



㈜효신테크의 코스티모"내장형 훈연 기능을 포함한 콤비오븐"은 수요가 급증하는 훈연 식품의 수요를 대응하고 외식업계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와 소비자의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차별화된 상업용 오븐입니다.

#### (내장형 훈연 기능을 포함한 콤비 오븐)



"내장형 훈연 기능을 포함한 콤비 오븐"은 기존 콤비 오븐의 기능 및 장점을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훈연 요리가 가능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훈연 기능을 포함한 콤비 오븐 제작 기술은 당사만 보유하고 있어, 국내시장을 선점하고 상업용 오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상업용 오븐 제조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해외시장에 진입하여 수출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훈연 기능을 포함한 콤비 오븐 제품은 업계 세계 1위 Rational(독일) 및 Convotherm(독

일) 등 일부 선진기업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경쟁업체들은 훈연 기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상업용 오븐에 융합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최근 관련 제품의 출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훈연기가 내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기업은 당사를 포함하여 Convotherm(독일), Alto-shaam(미국)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제품은 훈연재료의 발화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내장형 훈연 기능을 포함한 콤비 오븐"은 한국발명진흥회 IP제품혁신 과제를 통해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여 훈연 발생을 제어할 수 있고 발화를 방지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훈연 발생 제어와 발화방지구조는 제품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여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은 국내 특허 등록 및 PCT 출원을 완료했으며, PCT 개별국가(태국, 베트남, 중국)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훈연 기능을 포함한 콤비 오븐"의 내수활성화를 통해 수입을 대체하고 수출을 확대시키고자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한국정보통신(주)



## 01 기업개요



본사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남대문로 4가) 대한상공회의소 7층
홈페이지	www.kicc.co.kr
설립일	1986년
대표이사	권순배
사업영역	금융 VAN, 인터넷 결제(PG)
직무발명 도입 년도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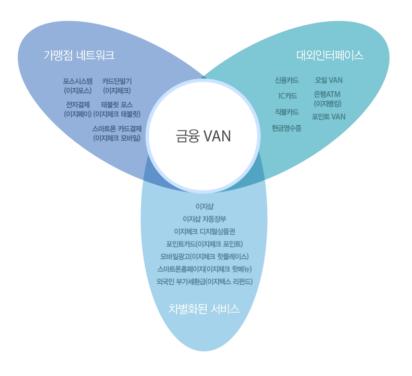
#### ▶ 주요 연혁

- 1986.05 한국정보통신(주) 설립
- 1988.08 '88서울올림픽 신용카드조회서비스 실시
- 1993.11 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 1998.01 한국정보통신(주) 코스닥 증권시장 상장
- 2008.06 VAN사 최초 POS Solution 개발
- 2009.02 이지체크 뱅킹서비스 개시
- 2010.03 국내 최초 유선신용카드단말기 PCI-PTS 인증 획득(PCI SSC)
- 2011.10 이지샵 자동장부 서비스 런칭
- 2012.02 '12 여수엑스포 공식 VAN 사업자 선정
- 2013.05 EasyCheckMobile(태블릿 POS시스템) 서비스 개시
- 2013.08 알리페이(Alipay)와 부가세환급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 계약 체결
- 2014.11 제4회 전자ICT특허 경영대상 은상 (전자신문)
- 2014.1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특허청)
- 2015.04 알리페이(Alipay)와 오프라인 결제서비스 계약 체결

#### ▶ 사업영역

#### 가. 금융 VAN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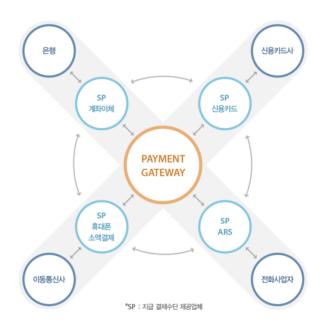
한국정보통신의 금융 VAN 사업은 카드단말기, 포스시스템이 설치된 100만 가맹점 네트워크와 카드사, 은행, 정유사, 포인트 제공사 등과 대외 인터페이스, 이들을 연결하는 VAN 시스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입니다.





#### 나. 인터넷 결제(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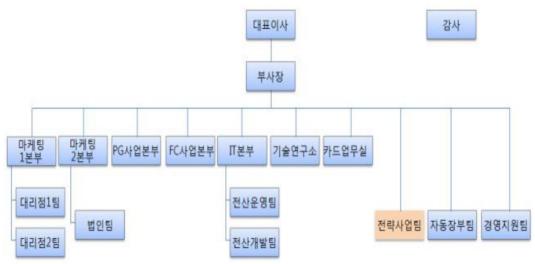
한국정보통신 인터넷 결제(PG) 사업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PG 솔루션을 온라인 가맹점에 제공하고 신용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 전화사업자 등과 제휴된 지급결제수단 제공업체들과의 인터페이스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수용하여 고객에게 편리함을, 가맹점에는 매출증대를 제공하는 결제 플랫폼입니다.



## 02 조직도

▶ 조직 구성 : 5본부 1연구소 1실 8팀으로 구성되며, 특허파트는 전략사업팀에 속해있습니다.

## 〈한국정보통신(주) 조직도〉



## 03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용

한국정보통신의 특허전담부서는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차장 1명 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업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업무, 신규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업무, 특허 동향 분석 업무, 지식재산권 교육 업무, 직무발명 보상금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04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1989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863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고, 총 340건의 지식재 산권을 보유하는 등 동종업계에서 최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권리화 현황(1986~2015.11)〉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출원	534	38	42	249	863
등록	170	19	35	116	340

## 05 특허 교육실적

한국정보통신은 임직원들의 발명의욕 고취 및 지식재산권 지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특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되는 직급별 외부 교육 시 내부 사내강사 또는 외부 변리사를 초빙하여 특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06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지급 규정

한국정보통신은 2007년에 "제안제도"를 시작으로 이후 2010년 4월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직무발명 및 제안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을 보호, 장려하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 및회사에 대한 기여방안을 합리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직무발명보상은 아래 표와 같이 출원, 등록, 실시·처분, 유효 특허, 출원 유보, Royalty 절감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상금 종류

- ❖ 출원보상금: 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 ❖ 등록보상금: 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 실시 처분보상금: 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하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 유효 특허 보상금: 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 ❖ 출원 유보 보상금 : 제14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 Royalty 절감 보상금: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여 타사에 지불해야 할 특허 Royalty 를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기준표〉

#### 1. 출원 보상금 (제17조 제1항 제1호)

등급	평가점수	특 허(실용신안 포함)	비고
S등급	<u>82</u>	100만원	분기별 A등급 평가
A등급	80 – 100	50만원	
B등급	60 – 79	30만원	권리 승계
C등급	40 - 59	10만원	
D등급	0 - 39	3만원	권리 미승계

#### 2. 등록 보상금 (제17조 제1항 제2호)

- 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 시 출원보상금의 100% 지급

#### 3. 실시·처분 보상금 (제17조 제1항 제3호)

구 분	기준금액	보상금 산정
실시보상금	순이익 × 기여도(당해 특허가 기여한 비율)	기준금액 × 10%
처분보상금	Royalty 수익액 or 양도이익	기준금액 × 20%

- 순이익 : 발명에 대한 실시로 인하여 회사가 얻은 이익
- Royalty 수익액 : 발명에 대한 실시하여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
- 양도이익 : 발명에 대한 양도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 출원제비용
- 출원제비용 :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 유지에 소요한 비용

#### 4. 유효 특허 보상금 (제17조제1항제4호)

기준금액	보상금 산정
당해 특허의 출원 보상금	기준금액 × 500%

- 유효 특허 보상금 지급 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보상금 추가 지급 가능
- 5. 출원유보 보상금 (제17조 제1항 제5호)
  - 출원유보 보상금 지급 기준은 상기 출원 보상금 지급 기준과 동일
- 6. Royalty 절감 보상금 (제17조 제1항 제6호)

기준금액	보상금 산정
실질적인 Royalty 절감 금액	기준금액 × 10%

- 로열티 절감금액 : 로열티 요구액의 80% 로열티 결정액
- 상대방 특허의 객관적인 가치에 따른 적정 요구액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로열티 최초 요구금액의 80%를 적용함

2011년 11월에는 문서 제출방식의 제안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온라인 제안 사이트 "상상오 션"을 오픈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임직원들이 쉽게 제안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제안 에 마일리지(새우 1마리당 100원의 가치)를 제공하는 100%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상오션 사이트 메인화면〉

#### ▶ 특징

- 1) 마일리지의 캐릭터화
  - 제안활동 및 심사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새우 지급(새우 1마리는 100원의 가치)
  - 새우 100마리 이상은 현금으로 환급 가능(새우 100마리 = 1만원)
  - 새우 10,000마리는 돌고래 1마리로 교환 가능(돌고래 1마리 = 1백만원)





#### 2) 계급제도

• 새우 수나 돌고래 수에 따라 계급이 변경되며, 조타수 이상 레벨은 심사자로, 선장 또는 부선장은 심사위원으로 추대됨

상상직급	상상레벨(LV)	돌고래 수	세우 수	레벨 승급 단위
초보선원	1~10		0~999마리	새우 100 <u>마리</u>
선원	11~20		1000~2999마리	
갑판원	21~30	마리	3000~4999마리	새우 200마리
조타수	31~40	5000~699	5000~6999마리	
기관수	41~50		7000~9999마리	새우 300마리
기관장	51~60	1마리		
갑판장	61~70	2마리	각 직급별 0~9999마리	새우 1000마리
항해사	71~100	3마리 이상		
부선장	항해사 중 선정	8 <del>14</del> 61	-	<u> </u>
선장	항해사 중 선정	840	-4	<u>4-7</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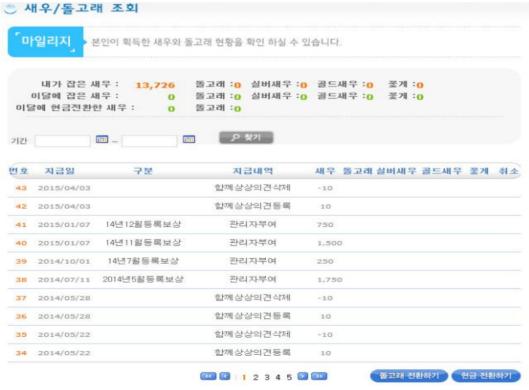
#### 3) 100% 보상제도

- 제안자는 아이디어 제출만해도 새우 5마리 또는 10마리 지급
- 제출된 아이디어의 지재권 출원여부에 따라 등급별로 1000~5000마리의 새우 추가 지급
- 심사자는 아이디어 심사 시 새우 3마리 지급
- 새우 또는 돌고래에 대한 마일리지 현금 횐급 신청 시 급여일에 현금 지급

## 07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2010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총 27,10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동남아 여행상품권 및 2박 3일의 포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상오션 개인 마일리지 지급내역 화면〉



사번	전환신청 새무(마리)	당 마일리지 돌고래(마리)	금액(원)	신청일
20091101	3,727	0	372, 700	2015/09/09
20130202	1,000	0	100,000	2015/08/18
20010422	0	1	1, 000, 000	2015/08/06
20030110	0	1	1, 000, 000	2015/08/06
20030112	0	1	1,000,000	2015/07/23
20130203	2,500	0	250,000	2015/07/10
20130203	1,900	0	190,000	2015/06/10
20040602	200	0	20,000	2015/06/02
20110104	1,200	0	120,000	2015/06/02
20081001	500	0	50,000	2015/06/01

〈상상오션 임직원 마일리지 현금 환급 신청 내역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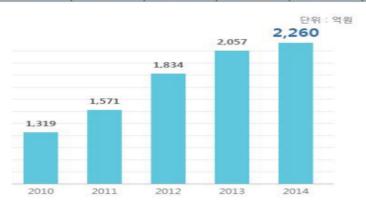
〈우수제안자에 대한 추가포상 시상 사진〉

## 08 제도 운영의 효과 및 매출의 변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매년 약 40건의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9%의 매출 성장을 시작으로, 연 평균 약 16%의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특허로열티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해당 특허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특허로열티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단위:건)

						(DT)
- 69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특허	40	40	27	39	35
	실용신안	3	1	7	1	5
출원	디자인	11	0	3	11	4
	상표	1	8	13	36	4
합계	55	49	50	87	48	
	특허	19	26	21	15	12
	실용신안	0	3	1	2	5
등록	디자인	2	11	0	9	9
	상표	3	0	4	8	32
	합계	24	40	26	34	58



〈한국정보통신(주) 매출액 현황〉



〈지식재산권 누적 등록건수〉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및 "특허경영대상 은상 "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 09 기타

####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인증번호 : 제 2014-00192호

업 체 명 : 한국정보통신(주)

대표자명 : 권 순 배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7층)

유효기간 : 2014. 11. 10 ~ 2016. 11. 9

「발명진홍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위의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특 허 청



#### ▶ 2014 전자ICT 특허경영대상 은상(전자신문사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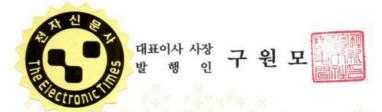


## 표 창 장

한국정보통신(주)

위 회사는 특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전자ICT업계의 귀감이 되었기에 이를 표창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주)에버켐텍



## 01 기업개요

본사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32번길 33 휴먼스카이밸리 313호
홈페이지	www.everchemtech.com
설립일	2008년 1월 21일 설립
대표이사	이성민
주생산품	LCD, OLED, SMART PHONE용 고기능성 표면처리제 및 FPCB용 기능성 필름
직무발명 도입 년도	2010년





#### ▶ 주요 연혁

<ul> <li>2008년 중소기업청 우수기업</li> </ul>	선성 및 중소기업정상상 수상
--------------------------------------	-----------------

• 2009년 수원대학교 산학협력 지원사업과제 선정

• 2010년 대한민국 창업대전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정보전자소재용 친환경 수성코팅제 수출

• 2011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중소기업청 미래선도과제 선정

• 2012년 벤처 유공포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그래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선정 경기 지식재산센터 IP스타기업 선정

• 2014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

• 2015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고성장 가젤형 기업'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선정

#### ▶ 회사소개

(주)에버켐텍은 사람 중심·환경 중심·기술 중심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제품에 적용되는 고기능성 표면처리제를 연구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정밀화학기업으로 전도성 고분자, 그래핀 등 차세대 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에 앞장서고있는 (주)에버켐텍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주요 제품에 대한 설명



〈고기능성 표면처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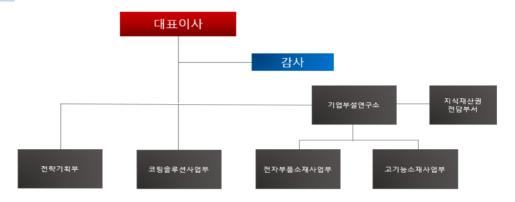
〈FPCB용 기능성 필름〉

고기능성 표면처리제는 LCD, OLED용 보호필름 및 일반 대전방지 필름에 코팅되어 사용되고 있다. 제품의 특징으로는 반영구적 고투명 대전방지 기능, 표면 저항의 경시 변화 안정성 양호, 우수한 슬립성 및 내화학성을 들 수 있다. 당사는 이를 통해 매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을 통해 이러한 고기능성 표면처리제 시장에서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FPCB용 기능성 필름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모바일 기기 및 가전 기기의 회로 구동시 발생되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필름이다. 당사에서 개발, 생산하는 소재를 토대로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며 고기능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02 조직도



## 03 특허 전담부서 설립과 운용

(주)에버켐텍은 창업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운용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여건상 관리부서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을 담당했지만 점차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이 확대되고 연구인력의 비중이 상승하며 현재는 연구소안에 전담부서가 설립되어 전담인력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에 대한 빠른 동향 파악이 가능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및 보상 등을 위한 서로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 04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특허				
	출원	등록		
2010년	1	1		
2011년	3	_		
2012년	_	1		
2013년	_	3		
2014년	5	-		
2015년	4	1		

## 05 특허 교육실적

㈜에버켐텍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수립과 더불어 직원들의 지식재산권 확립 및 동기부여를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특허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IP-R&D사업과 연계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적 탐구와 더불어 R&D역량 강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경기지식재산센터의 특허맵 지원사업, R&D 기획지 원사업 등을 활성화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특허교육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허교육에 대한 수강 대상 범위를 연구인력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관리부서에도 확대 하여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다루는데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 06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지급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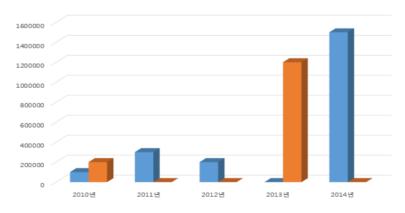
(주)에버켐텍은 2010년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지급규정을 시규에 확립하였으며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특별포상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상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구분	특허출원	특허등록	실용신안	디자인
국내	1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해외	20만원	40만원	15만원	10만원

## 07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규정이후 현재까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전시회, 세미나 등의 특별포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다양한 보상 범위를 제공하고 있다.

#### 〈직무발명보상〉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출원	10만원	30만원	20만원	-	150만원
등록	20만원	-	-	120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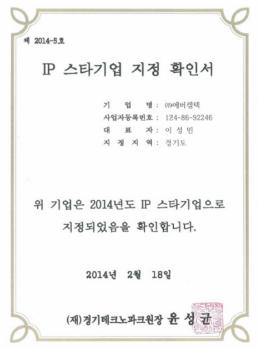
## 08 제도 운영의 효과 및 매출의 변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시행은 회사는 물론 임직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지재권 전담 인력을 롤모델로 일반연구원들은 보상의 혜택이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회사성장에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또한 회사는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R&D 기술 개발을 통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회사와 개인 WIN-WIN의 마음가짐으로 고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출원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한 제품들은 현재 기업의 성장 근원으로 자리잡았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10~20%이상 매출액을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기술개 발을 토대로 지속적인 신제품개발에 앞장서고 있어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09 기타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신화인터텍(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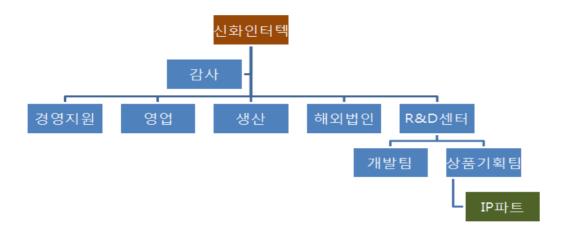
## 01 기업개요

본사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봉로 308	
해외사업장	중국(소주,동관), 대만, 유럽(슬로바키아)	
홈페이지	www.shinwha.com	
설립일	1988년 5월 27일 설립	
대표이사	이상훈	
종업원수	403명(2014년말 기준)	
주요산품	LCD용 광학필름	
주요고객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AUO, HAIER, VESTEL 등	
매출액	2,077억원 (2014년말 연결기준)	
종업원수	403명(2014년말 기준)	
직무발명 도입 년도	2009년	

#### ▶ 주요 연혁

- 1988.05 법인설립
- 2001.12 코스닥상장
- 2005.07 부설연구소 인정
- 2008.08 수출1억불탑 수상
- 2010.12 세계일류상품 인증(현재-복합반사시트)
- 2011.11 특허기술상 수상(고내열성 반사시트)
- 2013.04 효성그룹 계열사 편입
- 2013.12 세계일류상품 인증(현재-복합시트)
- 2014.04 신기술(NET)인증(LCD-TV용 일체형 광학시트의 공정기술)
- 2015.12 세계일류상품 인증(차세대-일체형 광학시트)

## 02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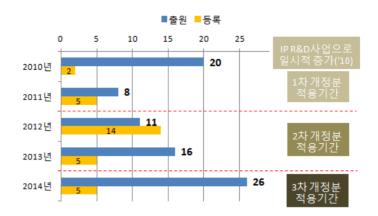
## 03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용

신화인터텍(주)의 특허전담조직은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된 2009년에 R&D센터내 신설되었으며, R&D센터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IDEA, 중간과정, 결과물 등을 같이 논 의하고 그로부터 양질의 발명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특허권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인 체제로 운영하며, 일부 인원은 타업무를 겸직 하고 있으나. 사외 변리사와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04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3차례 규정을 개정하며,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심의등급에 따른 보상금액을 차등화하여 양질의 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연구원들의 출원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3차 개정(2014년) 시에는 2차 개정(2011년)시에 비해 3배가 넘는 특허출원 실적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R&D특허센터 주관의 IP R&D 전략지원사업을 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 05 특허 교육실적

사내 특허교육은 사외 변리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거나, 특허담당자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지재권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수강한 후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파교육을 하거나, 지식재산 이러닝 단체교육 등을 활용하여 2회/년 이상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연구원들과 IDEA도출회의를 진행하며 발명의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우선 권주장, PPH 등의 출원방식과 같은 관련된 특허제도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06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지급 규정

신화인터텍(주)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예약승계규정과 양도증을 근거로, 개정된 발명진흥법에 맞추어 설립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하여 발명의 등급을 합리적으로 부여합니다. 이후 출원보상, 출원유보보상, 등록보상 등에 대하여 등급별로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를 두어 발명자가 보상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 발명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사내 인재상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보상 개념의 보상을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금전적인 보상과 인사적인 보상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허기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출원보상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0만원
등록보상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0만원
출원유보보상	50만원	25만원	15만원	5만원

- ※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장) 보상금액은 특허의 50% 수준으로 지급한다.
- ※ 정규출원 혹은 PCT, EPO출원 일 경우에만 출원보상금을 지급한다. (청구범위유예출원(KR), 가출원(US)등의 경우에는 미지급)
- ※ 우선권 주장을 통한 국내/외 출원시에는 국가별로 출원 및 등록 보상금의 50%를 지급하며, PCT출원의 경우에는 국내단계진입시점에 출원보상금을 지급한다.

## 07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2009년 5월 최초 출원하여 2011년 3월에 등록받은 내열성 강화 반사시트 특허가 있습니다. 해당 발명을 적용한 제품(제품명:SLP)은 2009년~2011년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 출시한 LED-TV에 독점적으로 탑재되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으며, 해당 기술은 2010년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고, 2011년에는 해당 특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기술상(지석영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개발하고, 원재료 개선을 통한수익성을 향상시킨 연구원 등에게는 총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별도의 실시보상을 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HI Research Center
Data, Model & Insight

2010/05/17 [산업분석]

2010/00/17 [[-6-2-7

INDUSTRY

Display Industry

##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산업

저렴하고 밝은 필름 어디 없나요?

#### 1. 반사필름(Reflector Film)

반사필름은 크게 Back light 반사필름과 Lamp 반사필름으로 나누어진다. White 반사필 름으로도 불리우는 Back light 반사필름은 도광관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Lamp 반사필름 은 캠프 커버내의 빛을 반사시켜 개확용하는 역할을 한다. 반사필름은 폴리에스테르 (PET)를 주원료로 반들이지며 표민은 UV코팅처리가 되어있다. 두께는 약 200마이크 로미터(5,000분의 1 미터)이다.

반사필름 업계는 크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들과 그 원자재를 구매하여 반사필름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구분된다.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Toray와 Teijin Dupom과 같은 일부 업체들은 원자재와 제품을 함께 생산하고 있다. 그 외 미국의 3M, 국내 SKC Hass, 신화인터랙 등이 반사필름을 공급하고 있다. 신화인터랙 5 우 LED BLU의 발열에도 제품의 손성이 없는 LED TV용 반사필름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제2010-007호

# 세계일류상품인증서

신화인터텍(주)

귀사가 생산하는 LCD용 복합반사필름은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수출증대 및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2010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되었음을 인증함

2010년 12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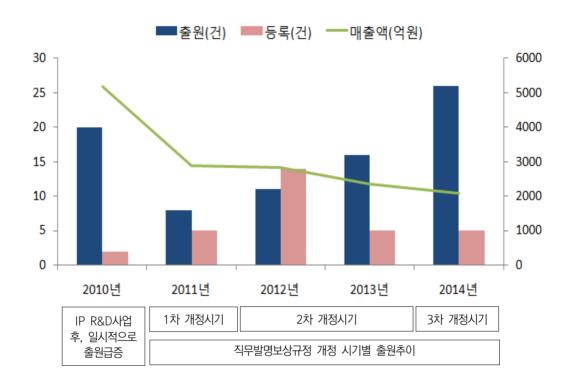




## 08 제도 운영의 효과 및 매출의 변화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전인 2001년~2008년까지의 연평균 특허출원건수는 연간 약 5건 정도였으나, 보상제도 운영이후 연평균 약 15건의 출원실적을 달성하여 300%이상 출원실적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2011년에는 LED-TV(LED를 이용한 LCD-TV)가 전세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시기였으나 발열이 많아 광학시트의 변형으로 인한 화질저하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신화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내열성이 강화된 반사시트 제조기술과특허를 확보하고, 삼성, LG 등 Major급 TV업체에 독점적으로 내열성 강화 광학시트를 공급함으로써 2010년에 5,200억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광학시트 시장이 성장기를 벗어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매출이 감소되고 있으나, 오히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출원과 연계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사상최대인 26건의 출원실적을 거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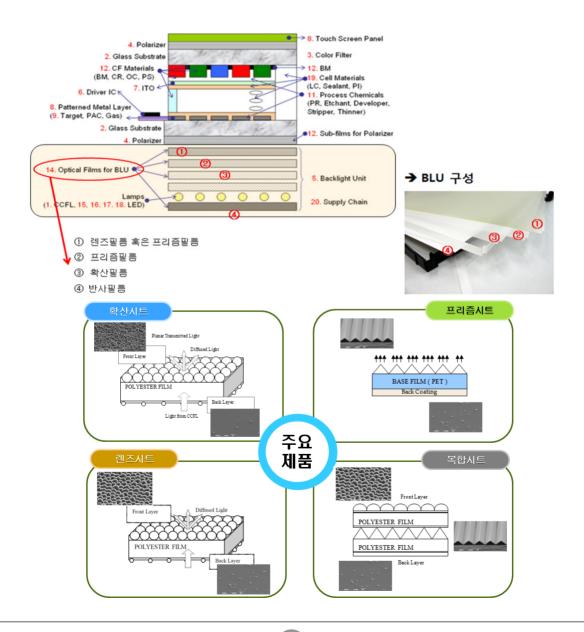


## 09 기타

당사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외에도 생산현장에서의 소발명 혹은 노하우로써 관리되어야 하는 아이디어 등에도 보상해주는 개선 제안제도를 통하여 2012년부터 아이디어와 효과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화 인재상' 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높은 성과를 거둔 발명자 등에 포상금과 인사고과에 대한 이득을 주는 등 특허발명보상 외에도 다양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는 주요 제품에 대한 조성물을 자체 개발하여 사업화를 성공시켜 원가절감 및 성능개선에 막대한 기여를 한 연구원이 '신화 인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발명은 노하우로 관리하고 별도 특허출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10 주요 제품

ICD는 OLED와 같은 자발광 소자가 아니므로 백라이트유닛(BLU)이라는 별도의 면광원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이 BLU는 점광원인 LED와 LED로부터 발산되는 광을 컨트롤하여 밝은 밝기로 균일하게 퍼트려주는 다양한 기능의 광학시트들이 적층되어 형성됩니다. 신화인터텍은 이러한 모든 광학시트들을 개발하고 제조하여,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외의 수많은 SET Maker에 공급합니다.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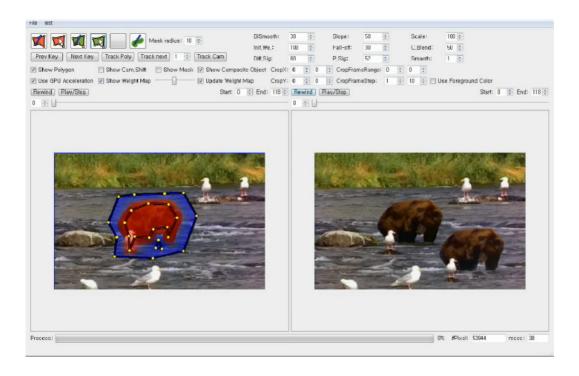
# 스타십벤딩머신(주)



## 01 기업개요

## ▶ 스타십벤딩머신(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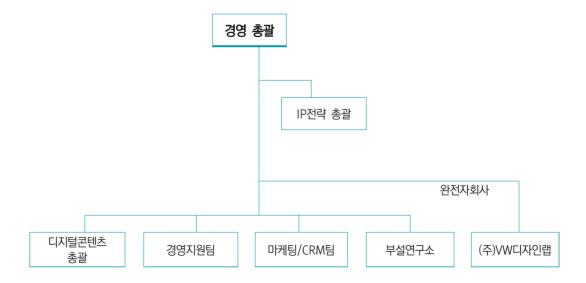
본사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 서울신기술창업센터 C동 206호
홈페이지	www.insertcoin.me
설립일	2013.12.02.
대표이사	전수영
주생산품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및 서비스)
직무발명 도입 년도	2014년



#### ▶ 주요 연혁

- 2013.12 스타십벤딩머신(주) 법인 설립
- 2013.12 미래부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선정
- 2014.02 벤처기업 인증
- 2014.07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2014.08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사업 선정
- 2014.12 본점 이전 (서울신기술창업센터)
- 2014.1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2014.12 중소기업청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선정
- 2015.03 미래부 학연공동기업부설연구소연계 후속연구개발사업 선정
- 2015.07 (주)브이더블유디자인랩을 완전자회사로 편입
- 2015.10 2015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수상 (실시간 동영상 합성기술)

## 02 조직도





## 03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용

스타십벤딩머신(주)은 컴퓨터그래픽스 및 컴퓨터비전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입니다. 자체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영상처리와 동작인식, 영상합성 분야에서 다양한 원천기술을 개발하였고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경영방침에따라 전략적인 IP포트폴리오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 직할로 전사적 IP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이사급의 겸임 인력 2 명을 배치하여 전략적 IP확보를 위한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보상 규정을 운용하는 전담조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무발명보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04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특허			상	丑	디자인	소프트웨어
구분	국내 등록	국내 출원	국제 출원 (PCT)	등록	출원	출원	등록
보유 수량	14	1	4	1	5	1	3

## 05 제도 운영의 효과 및 매출의 변화

구분	교육일자	교육명	교육주체
사외	2014/08/18~22	제1기 IP금융전문가(IPFP)과정	한국발명진흥회
사내	2014/10/17	지식재산권 기초	당사 내부 교육
사내	2015/02/11	연구노트 기반 기술문서 작성 및 특허명세서 초안 작성	당사 내부 교육
사내	2015/05/18	국제특허의 이해 및 전략적IP맵	당사 내부 교육
사외	2015/08/21	콘텐츠 수출 실무 워크숍 (중국진출 법률/IP 실무)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외	2015/08/26~27	국제 지식재산 라이센스 계약 및 협상	한국발명진흥회

## 06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지급 규정

## ▶ 출원/등록 보상금

78	보상	금액	ul¬		
구분	출원	등록	비고		
특허	40만/건	80만/건	국내/국제 구분 보상		
디자인	10만/건	30만/건			
실용신안	10만/건	30만/건			

## ▶ 실시/처분 보상금

구분	산정기준	보상금 산정
회 사	순이익 1,000만원 이하	기준금액 x 30%
자기(직접)실시	순이익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기준금액 x 20% + 100만원
실 시	순이익 5,000만원 초과	기준금액 x 15% + 350만원
향도	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입액 1,000만원 이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x 30%
또 는 실	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입액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 x 20% + 300만원
실 시 허 여	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입액 5,000만원 초과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5,000만원) x 10% + 1,100만원

- 1. 순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순이익 = (총판매량 x 판매단가) - (제조원가 + 영업경비)
- 2. 기준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기준금액 = 순이익 x 이용률(당해 제품에서 직무발명이 이용되는 비율)



## 07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실적 및 시례

구분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의 명칭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1	10-2014- 0101620	10-1515845	동작 인식 방법 및 동작 인식 장치	0	0	
2	10-2014- 0100914	10-1515847	NUI 장치에 의해 수집된 동작정보의 보정 방법 및 장치	0	0	
3	10-2014- 0098129	10-1488662	NUI기기를 통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방법 및 제공장치	0	0	
4	10-2014- 0098842	10-1453815	사용자의 시점을 고려하여 동작인식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방법 및 제공장치	0	0	
5	10-2015- 0035864	10-1551915	영상압축방법 및 영상압축장치	0	0	
6	10-2014- 0182562	10-1547862	영상합성방법 및 시스템 (지오데식거리)	0	0	
7	10-2015- 0046768	10-1551917	영상 합성 장치 및 방법 (NUI정보)	0	0	
8	10-2015- 0044825	10-1555876	영상 합성을 위한 객체 추적 방법 및 시스템	0	0	
9	10-2015- 0041759	10-1555879	영상 합성 장치 및 방법 (색상보정)	0	0	
10	PCT/KR2015/ 006475		동작 인식 방법 및 동작 인식 장치	0		
11	PCT/KR2015/ 006477		NUI 장치에 의해 수집된 동작정보의 보정 방법 및 장치	0		
12	PCT/KR2015/ 006431		NUI기기를 통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방법 및 제공장치	0		
13	PCT/KR2015/ 006476		사용자의 시점을 고려하여 동작인식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방법 및 제공장치	0		
		직무발명	보상 금액 합계	1	2,400,00	0

## 08 제도 운영의 효과 및 매출의 변화

당사는 2013년 12월 창업하여, 약 1년7개월의 업력을 가진 신생업체로써, 현재 R&BD의 단계에서 사업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출원된 지식재산권의 수량이 21건으로,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역시 현재까지 7건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자산화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의 IP확보량이 증가하면서 대외적으로 기술적 우위와 신뢰도를 제고한 결과,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것은 물론 B2B 솔루션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체적인 B2C 서비스의 개발과는 별도로 국내외 유수 대기업과의 B2B솔루션 공급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이며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이 모두 원천적으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 09 기타

당사의 직무발명 중 대표 사례로는 〈특허 10-1547862 : 영상합성방법 및 시스템〉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본 특허는 서로 다른 동영상 간의 자연스럽고 정확한 합성을 실시함에 있어 빠른 계산 속도를 보장하는 실시간 동영상 합성 기술에 대한 특허인 바, 당사 내부에서 본 특허를 중심으로 한 관계기술 특허가 6건에 이르는 등,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특허맵 구성에 핵심이 되는 특허이기도 합니다.

본 특허에 기반한 실시간 동영상 합성 기술은, 모바일에서 동작하는 자체 B2C서비스 출시가 확정된 상태이며 2016년 1분기를 목표로 사업화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대기업 및 국내 대형 광고기획사 등과의 사업제휴를 위해 B2B 솔루션 공급에 대한 협상이 별도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당사는 현재, 본 특허에 대한 출원/등록 보상을 실시하였고, 당사 내부의 유관 특허들에 대해 내부 심의위의 안건 상정 일자에 따라 단계적으로 출원 보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화 과정이 사내에 공유되고 투명한 직무발명보상 운영 사례를 직접 접한 덕분에 전사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이는 R&D인력에 대한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사내의 긍정적 공감대는, 창업 초기단계인 당사가 현재의 약점을 극복하는 핵심적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재제일주의〉 원칙을 실천하는데 훌륭한 동력이되고 있으며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의 유치와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01. 직무발명 모델 규정 02. Q&A로 알아보는 직무발명보상제도



# 01 직무발명 모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자	직위 :	
십구시	성명 :	(인)

							00.	( 🗀 /
	빌	<u></u> 명	신 5	1 서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성 명	ス	분(%)		소속		전화번호	-
	한글: 영문:							
발 명 자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관련연구과제 및 자금지원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출원 희망국								
발명의 공개여부 및 계획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사본]							
발명의 종류	□ 직무발명		□ 자유발	명				
발명의 현단계	①아이디어단계 ②연구: ④시제품제작중 ⑤시제			— —	입증			
사업화를 위	니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여	부	□YES	ÆS □NO		INO		
사업호	· 가능분야(구체적으로)							
관심을 기	l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1. 2.		2.			
연구노	트의 관리여부 및 소재		□YES □NO					
본	발명과 관련된 특허							
(특허,	(특허,논문,시장정보) 키워드							
	위의 발명을 ○○주식회사 직무발명규정 제4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대표		(인)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귀중							

## [별지 제2호 서식]

양 도 증 (지분 표시)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지분율
	성 명	(인)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양 도 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 타							
양 수 인	성 명	OO주식호	사	대표이사				
6 T L	주 소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직무발명규정 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귀중								



## [별지 제3호 서식]

발 명 설 명 서(명 세 서) - 1					
1.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발명의 목적】 3.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3.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3.2 그 분야 종래기술의 설명 및 문제점				
	3.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발명의 목적)				

## [별지 제3호 서식]

	발 명 설 명 서(명 세 서) - 2
3.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구성】 3.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나) 기능 및 작용 다) 실시 예  【발명의 효과】
4. 특허청구 범위	4.1 청구항1         4.2 청구항2         4.3 청구항3



## [별지 제4호 서식]

선행기술 조사서							
제출자 (발명자)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제출일자				
		1. 선행기술과의 대비					
기존 특허 (제목 ,특허번호,		본 발명 대비 신규성 (어떤 점이 새로운가?)	본 발명 대비 진보성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2. 관련자료(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기술 요약	참고문헌과 본 발명으				

## [별지 제5호 서식]

통지일자		
스 러 기	직위 :	
수 령 자	성명 :	(인)

심사결과 통지서							
문서(접수)번호							
수신(발명자)							
발명의 명칭							
제 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00 주식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5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 정 사 항					
1. 직무발명 여부	<u>.</u>						
2. 회사의 승계 여부							
3. 특허성의 등급결정							
4. 국내외 출원여부							
5. 출원 시 심사청구여부							
6. 기타							
		20 년 월 일					
00주식회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00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							



#### [별지 제6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성 명		주	민등록번호			-	
신청인	소 속							
	주 소							
접수일자		20 .	•	접수번호	-			
발명의 명칭								

#### [신청이유]

1. 제5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제15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상기 본인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7조에 의거 20 년 월 일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00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증거서류

##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발명의 명칭						
제 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의신청결과 통지					
00 주식회사 중 결과를 아래와 집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7조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같이 통지합니다.					
	결 정 사 항					
1. 신청 이유(요약						
2. 결정 내용						
20 년 월 일 00주식회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00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						



## [별지 제8호 서식]

출원 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00 주식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출원여부 등을 통지합니다.					
권리 내용					
출원 여부					
출원 일자	출원 번호	<u>5</u>			
미출원 이유					
	20 년 월 일 00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				
		첨부 : 출원명세서			

## 02 Q&A로 알아보는 직무발명보상제도

##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 종업원이 할 수 있는 발명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종업원 등이 할 수 있는 발명에는 ① 직무발명 외에 ① 종업원 등의 직무와는 무관하지만 사용자 등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있는 발명인 '업무발명'과 ② 종업원 등의 직무 및 사용자 등의 업무와 무관한 발명인 '자유발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발명의 종류를 나누는 이유는 직무발명의 경우에만 사용자 등에게 법정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권리의 예약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발명과 자유발명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무발명제도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으므로 일 반적인 발명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 당하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이 가능한 발명**의 구분









#### 직무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업원 등이 완성한 발명이라고 해서 모두 직무발명인 것은 아닙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가.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종업원등'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업원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공무원도 이에 해당됩니다. 상근과 비상근을 가리지 않으며 임시직원3)도 종업원에 해당하지만, 고용관계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직무'란 사용자 등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상의 임무를 말합니다.

#### 나.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사용자등'이란 일반적으로 회사를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시키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업무범위'란 사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범위를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넓게 해석하여 사업수행상 직접 관계가 있는 발명은 모두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 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발명을 의도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발명은 성립하지만,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 등의 직무가 아닌 경우는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예: 일반사무직 직원이 한 발명). 한편,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4)

<sup>3)</sup> 이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의상 '종업원등'을 '직원'으로, '사용자등'을 '회사'로 표현하겠습니다

<sup>4)</sup> 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113 판결



종업원의 발명일 것

- 종업원: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지칭. 상근 비상근을 묻지 않으며 촉탁지원 이나 임시직원도 포함하나 고용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함
- 직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 사용자: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지칭
- 업무범위: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범위
- 법인의 경우 사업범위는 정관을 기초로 해석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 거의 직무에 속할 것

- 종업원의 직무: 발명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의 성립은 인정되나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 발명이 아님
-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종업원의 직무는 현재의 직무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내에서 과거에 수행한 직무도 포함



사내창업자가 발명을 한 경우, 원 소속회사의 직무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 가. 사실관계

- 원고는 X회사이고, 피고는 Y1(회사)과 Y2(개인)이다.
- 피고 Y2는 X회사(원고)에 입사하여 Y1을 창업하였고 현재까지 X회사에 근무하고 있 는 자이다.
- Y2는 2005년 10월에 X회사의 사내창업규정에 따라 Y1회사를 설립하였고. 사내창업 을 이유로 2005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12월 26일까지 X회사를 휴직하였다.
- 2006년 3월 22일 Y2는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2009년 03월 11일 Y2는 Y1에게 위 특허를 양도하였으며, X회사는 Y1과 Y2를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 등을 청구하였다.

#### 나. 결론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 Y2는 사내창업 휴직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위 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도 산입되지 않으며, X회사는 위 기간 동



안 Y2에게 실질적인 지휘 내지 명령권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의 특허는 X회사의 직무발 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



#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그 회사와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가?

####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피고 회사(Y1)에 입사하기 전에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고안을 하여 실용신 아등록을 받은 자이고, 공동피고인 Y1은 회사이며 Y2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Y1회사 및 Y2는 X에게 체인을 코팅하는 기계장치의 제작을 의뢰하고 Y1회사가 비용 을 부담하기로 계약하였다.
- X는 고안을 완성하고 Y1과 공동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 X는 Y1회사의 공장장으로 입사했고, 본인의 지분을 Y1회사에 이전했지만, 그 후에 X 는 Y1회사를 퇴사하였다.
- X는 Y1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고안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그 고안이 Y1회사에 승계 되었으므로, Y1 및 Y2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 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고안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발명된 것이므로 이 고안이 직무발명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파시하였습니다.

물론, Y1회사와 X사이에 기계장치의 개발의뢰 계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용계약 이 아니었고, 그 후에 X가 Y1회사에 입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고용계약이므로 X의 입사 전에 완성된 발명을 Y1회사에 대한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6

<sup>5)</sup> 대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sup>6)</sup>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가합2717 판결



통상적인 관리업무만을 수행한 사람이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에도 직무 발명에 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 가 시싴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Y)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 Y는 주식회사이다.
- X는 부하직원들에게 이 사건 발명들에 대한 개발에 착수하도록 지시하고 그 기술개발 의 진행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발명이 완성된 후에는 담당 기술자 등과 공동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발명자로 게재되었다.
- 이 사건 발명들이 등록된 후에 X는 피고 회사(Y)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나. 결론

법원은 개발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팀장으로서 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뿐 특허발명에 대한 기여요소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개별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통상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하는데 그쳤을 뿐이고, 당면한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타개할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X)는 이 사건 발명의 진정한 공동발명자라고 볼 수 없으며, 출원서에 발명 자로 게재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발명을 완성한 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Y)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7)



. 특허부서 직원이 발명신고서의 청구항을 수정하고 일부 도면 등을 수정하여 특허출원 을 명확히 한 경우 공동발명자라고 할 수 있는가?

####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피고 회사(Y)의 특허부서에서 연구원 등의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는 Y주식회사이다.

<sup>7)</sup>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6나62159 판결



- Y회사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발명자 A가 이 사건 발명을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의 일부가 Y회사 특허부서를 거치면서 X에 의해 수정되었다.
- 그 후 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Y회사가 특허권을 취득하자 X는 피고 회사(Y)에게 직무 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나. 결론

법원은 원고(X)가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X가 실제 발명자로 추정된다고는 할 것이지만,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X는 단지 이 사건 발명의 특허출원업무의 진행과정에서 발명자 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양도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므로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만약 실제로 X가 이 사건 발명신고서의 청구항을 수정하고 일부 도면 등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X를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X가 피고 회사(Y)를 상대로 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청구는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8)



#### . 행정업무만 담당하던 공무원이 발명에 참여한 경우,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가?

####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광역자치단체이며, 피고(Y)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국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 공무원인 Y와 공동고안자인 A는 이 사건 고안을 자유제안의 형식으로 원고(X)에 제안 하여 포상을 받았고, 그 후 Y는 A와 함께 출원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 한편, A는 Y와 상의 없이 원고(X)에게 직무발명 신고를 하였고, 원고(X)는 직무발명보 상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고안을 승계하기로 의결하고, Y에게 Y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도록 요구하였다.

<sup>8)</sup>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 Y가 원고(X)의 지시를 거부하자, 원고(X)는 Y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지분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나. 결론

법원은 해당 고안이 원고(X)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발명이기는 하나, 공무원 Y가 고 안을 하게 된 행위가 Y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Y의 직무수행 내지 직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Y가 근무한 부서에서의 구체적인 업무는 대부분 민원, 행정관리업무였고, Y가 이 사건 고안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었으며, Y와 A가 자신들의 비용으로 업무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고안을 완성한 점, Y와 A가위 고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원고(X)로부터 업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등을 들어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Y가 담당한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이 사건 고안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X)의 지분이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별도의 규칙에 의해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를 벗어나는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그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9

<sup>9)</sup>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가합9775 판결



## 사용자등과 종업원 등의 권리와 의무



##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은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발명을 완성시킨 종업 원은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보상을 받을 권리 ③ 발명자 게재권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고, ④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무 ⑤ 비밀유지의무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완성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귀속됩니다.10)

#### 나. 보상을 받을 권리

종업원 등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sup>11)</sup>

보상에 대하여 회사와 직원간의 고용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① 그 발명에 의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과 ① 그 발명의 완성에 회사와 직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2) 이러한 규정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직원이 보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 발명자 게재권

직무발명을 완성시킨 직원은 특허출원, 출판, 논문 등의 문서에 발명자로서 이름이 게재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발명자로서 당연히 가지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발명자로의 게재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sup>10)</sup> 특허법 제33조 제1항

<sup>11)</sup>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sup>12)</sup>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 라.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무

직무발명을 완성한 직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에 참여한 직원의 공동명의로 회사에 완성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13) 이는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회사가 쉽게 파악하여 발명의 안정적인 승계와 기술유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에 대한 통지가 인정되는 시점은 완성사실을 담은 문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도달주의). 직원은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서면외에 전자문서(이메일, 전자결재 등)에 의한 통지도 문서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이유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 수 있는 회사와 직원 간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를 명확히 남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마. 비밀유지의무

직원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됩니다.14)

만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5)



<sup>13)</sup> 발명진흥법 제12조

<sup>14)</sup> 발명진흥법 제19조

<sup>15)</sup> 발명진흥법 제58조





# 사용자 등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 연구시설, 연구지원, 기술전수, 교육,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 에. 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갖지만 직원에게 소정의 보상금 등 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 가. 법정통상실시권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원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거나 직원으로부터 특허·실용 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은 경우, 회사는 그 특 허 등에 대하여 법정통상실시권을 갖게 됩니다.16)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원이 직무발 명을 완성시킴에 있어서 회사가 일정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법정의 권리입니다.

#### 나. 예약승계를 통한 권리취득

회사는 직원이 앞으로 완성시킬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직 원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예약승계계약이라고 하며, 직원이 회사에 입사 할 때 고용계약서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예약승계계약을 맺음으로서 성립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발명 중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미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회사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17)

만약 직무발명이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제삼자와 공동으로 완성된 경우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으면 회사는 그 발명에 대하여 해당 회사의 직원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18)

#### 다. 동의할 수 있는 권리

직원이 특허권을 등록받은 경우, 회사는 발명진훙법에 따른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 니다. 따라서 직원은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 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19)

<sup>16)</sup>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sup>17)</sup>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sup>18)</sup> 발명진흥법 제14조

#### 라.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여부 통지 의무

회사는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통지한 직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문서로 회신해주어야 합니다.<sup>20)</sup> 회사가 승계하기로 회신할 경우,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sup>21)</sup> 만약, 회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직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회사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발명을 한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sup>22)</sup>

따라서 직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완성사실을 통지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승계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할 경우, 회사는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지만, 승계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조차도 종업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마.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

예약승계에 의하여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 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sup>23)</sup>

또한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뒤 출원을 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sup>24)</sup>



<sup>19)</sup> 특허법 제119조 제1항, 제136조 제7항

<sup>20)</sup>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sup>21)</sup>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sup>22)</sup>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sup>23)</sup>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sup>24)</sup> 발명진흥법 제16조



## 예약승계규정



#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직원의 직무발명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의 승계여부는 종업원등과 사용자등간의 개별계약에 따라 처 리되지만, 사용자 등은 적어도 특허권 등에 대하여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 여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회사는 그 권리의 승계를 요구할 수는 없고 법정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 가.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의 취급

#### 승계의사 통지 (대통령이 정한 기간 이내)

▶사용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 종업원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

#### 不 승계의사 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

- ▶사용자 무상의 통상실시권취득
- ▶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 승계여부 미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

- ▶사용자:종업원 동의하의
- 통상실시권취득
- ▶ 종연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 나.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의 취급

#### 종업원 등의 양도의사 無

- ▶사용자
- 무상의 통상실시권취득
- ▶ 종업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 종업원 등의 양도의사 有 (사용자 등의 양수의자 有))

- ▶사용자
- 고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 종업원
- 정당한 보상청구권취득





구체적인 예약승계계약이 없더라도 회사의 직무발명제안지침이 있었다면 예약승계 규정으로 볼 수 있는가?

#### 가. 사실관계

- 피고(Y)는 원고 회사(X)에 입사하여 2008년 퇴직하였다. Y는 X회사에 재직 중에 담당 업무에 관한 이 사건 특허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 X회사는 Y와 직무발명에 관한 예약승계계약을 하지 않았고, Y의 입사 당시 고용계약 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 X회사는 2000년부터 '회사는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직무발명에 관한 제권리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직무발명제안지침을 사규로 정하였다.
- X회사는 그 동안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Y 에 대하여 Y가 취득한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지분이전을 청구하였다.

#### 나. 결론

법원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예약승계규정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명시적인 예약승계계약이나 고용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나, 2000년부터 X회사는 직무발명제안지침을 만들어 시행하였고, 2003년부터 Y가 퇴사한 2008년까지 5년 이상 Y가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포상을 하였고, Y도 역시 자신이 완성한 대부분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X회사에게 권리를 승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자 간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었고, 이 사건 특허에 대한 Y의 지분을 X회사에 이전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sup>25)</sup>

<sup>25)</sup> 대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115791 판결





## 직원이 완성한 모든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기로 한 규정이 유효한가?

####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광역자치단체이고 피고(Y)는 그 소속공무원이다.
- Y와 공동고안자인 A는 이 사건 고안을 자유제안의 형식으로 원고(X)에게 제안하여 포 상을 받았고, 그 후 Y는 A와 공동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 A는 Y와 상의 없이 원고(X)에게 직무발명 신고를 하였고, 원고(X)는 Y에게 Y의 실용 신안권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Y가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자 Y를 상 대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지분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결론

원고(X)의 공무원제안규칙 제28조에서 '시장이 공무원제안을 통한 발명이나 고안 등을 채택하는 경우, 그 발명이나 고안 등에 대하여 권리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공무원제안제도의 취지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규칙이 공무원의 모든 발명에 대하여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직무발명이나 직무고안 등에 한하여 권리가 승계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6)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완성한 모든 발명에 관한 승계규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규정 전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직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부분은 유효하므로 직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은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

<sup>26)</sup>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가합9775 판결

#### 보상금의 산정과 지급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유형

일반적으로 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보상)의 종류로 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이 있으나, 보상금 종류 및 보상금액 등은 사 용자와 직원이 협의하여 정하고,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사용자는 보상금으 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 가. 발명(제안)보상

발명(제안)보상은 종업원 등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 원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종업원 등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 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입니다.

#### 나. 출원보상

출원보상은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을 사용자 등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 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입니다. 출원보상은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지만, 특 허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 후에는 후출원 배제의 효과 와 출원 공개 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 다. 등록보상

사용자 등이 승계한 발명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되었거나 특허등록되어 권리를 확보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 라. 실시보상

사용자 등이 출원 중인 발명 또는 특허 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 등이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마. 처분보상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받는 보상으로 실시보상과 마찬가지로 처분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바. 출원유보보상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사내노하우 등으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 시 중 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으로 서, 이 경우 보상의 액은 당해 발명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종업원 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27)

#### 사. 기타 보상

이 밖에도 출원발명의 심사청구 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심판에 참여하여 그 권리를 무효로 한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적발 시에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습니다.

<sup>27)</sup> 발명진흥법 제16조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피고 회사(Y)에서 개발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 X는 Y회사 재직기간 중에 발명을 완성하였고, X가 완성한 직무발명들은 Y회사로 승 계되었으며 Y회사가 이를 출원하고 등록받아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 Y회사는 X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X는 Y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 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나.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X가 한 발명이 직무발명임을 인정하고, Y회사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



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sup>28)</sup>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 = A \times B \times C \times D]$

A: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득액

B: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률

C :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D: 원고의 기여도



<sup>28)</sup>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4가합22 판결



#### 임금이나 성과금 등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갈음할 수 있는가?

#### 가. 사실관계

- 워고(X)는 1998년 피고 회사(Y)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년 4월에 퇴사한 자이다.
- X는 Y회사에 재직 중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고.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Y회사에게 양도하였다.
- Y회사는 위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었는데, X는 Y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 나. 결론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법률은 강행규정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행사 및 보상금의 정당한 액수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은 무효이고.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한 직무발 명 보상금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기 사건에서 Y회사가 X와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X에게 Y회사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 공하였고, 약 1억 2400만원 상당을 자문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주었으며 성과급 등을 지급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9) 또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직무발명의 완성대가로 임금을 인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급여에 관한 것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과는 다른 성격의 채권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30)



🌺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업무가 다른 회사로 양도(M&A)되었을 경우, 이전 회사에 근 무할 때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새로운 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가?

#### 가 시실관계

- 원고(X)는 공동피고인 Y1회사에 재직 중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Y1회사에 양도한 자이다.

<sup>29)</sup> 대법원 2009. 10. 7. 선고 2009나268409 판결

<sup>30)</sup>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316 판결



- Y1회사는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고, Y1회사는 무선단말기사업부분에 관한 자산, 채무, 영업비밀, 계약상 지위 등을 Y2회사에 양도하였으며, X는 Y2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 나. 결론

위와 같은 사건에서 X는 Y1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정하고 있는 '처분보상'의 규정에 따라서, Y1회사가 Y2회사와 체결한 양도계약에 따라 특허권을 양수한 Y2가 이 사건각 특허권을 라이선스하여 얻는 수입을 기준으로 X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Y2회사는 Y1과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무형자산 중 일부러 특허를 받을 권리또는 특허권만을 인수하였을 뿐 X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보상금 채무는 인수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X로서는 Y1, Y2가 이 사건 각 특허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실시료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처분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자명하므로, X의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은 계속적인 라이선스 발생 이후에 비로소 행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X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X가 Y1회사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Y1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 정한 각 사유에 따른 개별적인 보상금 청구권은 각 사유의 발생시점에 함께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Y1회사와 Y2회사의 양도기준일(2001. 4. 30.)을 기준으로 양도기준일 전에 발생한 보상금은 Y1회사가, 양도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는 보상금은 Y2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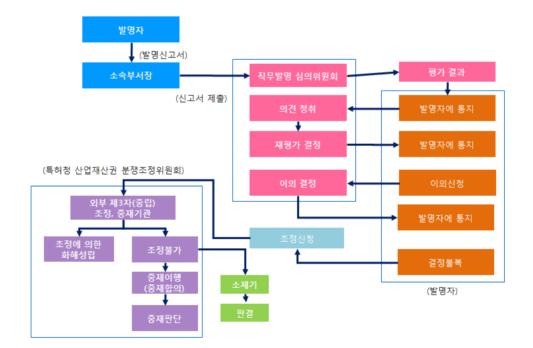


## 직무발명을 둘러싼 다툼의 해결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상금 청구권은 사법(私法)상의 권 리이기 때문에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등을 두어 발명자 직원과 회사 간에 송사(訟事)가 밤생하기 전에 워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 고 사내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으로 가기 전에 특허청에 설치 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 , 직무발명 보상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의 발단은 결정된 '보상액'에 대한 발명자인 종업원 등의 불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먼저 보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종업원등 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단계에서 사용자 등이 결정한 보상액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설명에서 직무발명규정의 적용,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액, 발명과 관련하여 사용자 등이 한 부담, 공헌 및 종업원 등의 처우, 자사 및 타사에서의 종래의 사례, 기타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발명 그 자체의 기술적 평가가 높은 것에 비례하여 반드시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발명을 제품화하고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의 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발명자가 스스로 그 발명을 사업화하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보상액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된 보상액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의 불씨가 되는 불만에 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그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복신청에 관하여 심의할 사내기관을 마련해 두고, 그 기관에는 중립·공정을 기하기 위해 또는 종업원 등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흑백을 가리므로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항소, 상고라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어 다툼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제출된 주장과 입증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완전한 입증을 한다는 것이 당사자에게 용이한 일은 아니며, 사용자 등의 공헌도, 발명자 측의 공헌도와 같은 대응하는 요소의 판단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어떤 평가방법으로 정하는가 라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의 예측, 보상액의 예측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 소송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회피하고, 사태 해결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해결에 이르는 지름길이 소송에 의한 승패만은 아닙니다. 회사는 발명자인 직원을 이해하고, 직원은 회사를 신뢰한다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서로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함으로써 보상액을 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상 결정을 위한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진다면, 분쟁의 예방이 가능하며, 설사 발생하였다고 해도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기 타



##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한 직무발명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가 됩니다. 다만,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됩니다.31)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이 국가 등에 승계된 경우에도 역시 승계한 측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32) 그리고 국유가 된 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는 특허청장이 관장합니다.33)



#### 토지 후 발명 또는 출원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직원이 회사를 퇴직한 후의 발명 또는 출원이 재직 중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문제가 많이 됩니다. 퇴직 후 발명은 원칙적으로는 직무발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명이 재직 중에 완성된 것이라면 퇴직 후에 출원하더라도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퇴직 후에 완성된 경우라도 그 발명의 상당 부분 또는 주요 부분이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무 발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의 완성시점이 퇴직 전인가 후인가의 판단은 매우 곤란하므로 그에 관한 대 비책으로 퇴직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발명은 종전의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규정, 이른바 추적조항(追跡條項)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구적인 추적조항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추적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민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sup>31)</sup>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sup>32)</sup> 발명진흥법 제15조 제7항

<sup>33)</sup> 발명진흥법 제10조 제4항

##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작성

```
감 수 산업재산정책국 국 장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과 과 장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 사 무 관 박종필
산업재산정책과 주 무 관 신혜영
작 성 한국발명진흥회 부 장 김동환
한국발명진흥회 변 리 사 지예은
한국발명진흥회 주 임 강다혜
한국발명진흥회 사 원 윤다혜
```

발 행\_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발 행 일\_2015년 12월

발간등록번호 \_ 11-1430000-001289-01

ISBN 978-89-6199-888-8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